

**2016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성과주의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 토 보 고

I. 회부개요

1. 의안번호 : 제862(예산안), 제863호(기금안)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3. 제출일자 : 2015년 11월 10일
4. 회부일자 : 2015년 11월 11일

II. 검토의견

1.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2016 회계연도 세입 예산안 편성 개요

-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485억 4,800만원으로, 이는 서울특별시 일반회계 총 세입 19조 1,695억원의 5.5%에 해당하는 규모이며, 2015년

예산 대비 510억 5,400만원(5.1%)이 증액된 것임.

〈표 1. 2016회계연도 세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5년 예산 (최종예산) ①	2016년 예산(안) ②	증감 ② - ①	증감율 (%)
997,494	1,048,548	51,054	5.1%

나. 2016 회계연도 세입예산안의 주요 특징 및 최근 5년간 변동추이

- 2016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예산의 세입구조는 주로 ‘보조금’과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에 의한 것으로,
 - ‘보조금’ 수입은 6,431억 6,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63.3%를 차지하고, 다음으로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는 3,830억 5,800만원으로 전체 세입의 36.7%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세입 예산 중 ‘보조금’의 최근 5년간의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국고보조금의 절대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가운데, 상대적 비율은 2011년 93.9%에 이르던 것이 점점 감소하여 2012년 74.6%, 2013년 62.5%로 감소하였고, 2016년에는 61.3%까지 감소함.
- 한편, ‘보존수입 등 내부거래’의 최근 5년간 변동 추이를

살펴보면 2012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한 이후 2013년 에 전체 세입비율의 40.3%까지 증가하였다가, 2016년에 36.5%를 차지하면서 2015년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처럼 세입예산의 ‘보조금’ 비율이 매년 점차로 줄어드는 대신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늘어나는 현상은, 보육료 가운데 만 3세 누리과정 보육료의 전액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지원됨에 따라, 이에 따른 자금의 출처가 달라짐으로써 국고보조금은 줄어들고,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은 늘어났기 때문임.

〈표2. 2015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예산액	증감액	증감율(%)
계	438,307 (100%)	829,852 (100%)	951,689 (100%)	997,494 (100%)	1,048,548 (100%)	51,054 -	5.1% -
세외수입 (전체대비 구성비율)	17,939 (4.1%)	26,680 (3.2%)	7,271 (0.8%)	6,065 (0.6%)	22,322 (2.1%)	16,257 -	268.0% -
경상적세외수입 (전체대비 구성비율)	2,136 (0.5%)	2,124 (0.3%)	2,113 (0.2%)	383 (0.0%)	557 (0.1%)	174 -	45.4% -
공유재산임대료	2,136	2,124	2,113	383	557	174	45.4%
임시적세외수입 (전체대비 구성비율)	15,803 (3.6%)	24,556 (3.0%)	5,158 (0.5%)	5,682 (0.6%)	21,765 (2.1%)	16,083 -	283.1% -
시도비 반환금수입	11,588	7,456	4,406	4,709	19,662	14,953	317.5%
그외수입	4,215	17,100	752	973	2,103	1,130	116.1%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전체대비 구성비율)	13,022 (3.0)	32,694 (4.0)					
보조금 (전체대비 구성비율)	327,112 74.6%	518,260 62.5%	642,127 67.5%	623,979 62.6%	643,168 61.3%	19,189 -	3.1% -
국고보조금	312,992	493,890	624,956	611,579	620,765	9,186	1.5%
교육비특별회계	360	360		-	-	-	-
기금	13,760	24,010	17,171	12,400	22,403	10,003	80.7%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전체대비 구성비율)	80,234 18.3%	252,018 30.4%	302,291 31.8%	367,450 36.8%	383,058 36.5%	15,608 -	4.2%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2,154	1,526	1,692	1,225	1,734	509	41.6%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78,080	250,492	300,599	366,225	381,324	15,099	4.1%

*주) ()괄호 안은 2015년 예산의 구성비를 말함

다. 세입 세부 항목별 검토의견

1) 시·도비 반환금 수입 징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 필요

- ‘시·도비 반환수입’ 예산은 자치구 등에 기 집행된 사업비 잔액이 반환을 예상한 세입항목으로, 2016년에는 217억 6,500만원이 편성됨.

〈표 3. 임시적 세외수입 예산 명세〉

(단위: 백만원)

구 분	2014결산	2015예산(A)	2016예산(안)(B)	증감(B-A)
계	5,158	5,682	21,765	16,083
시도비 반환금 수입	4,406	4,709	19,662	14,953
그 외 수입	752	973	2,103	1,130

- 시·도비 반환수입의 2016년 예산안은 전년도에 비하여 그 절대금액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47억원⇒196억원으로 증가) 그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는 ‘국공립확충사업’ 및 ‘아이돌보미 사업’ 등 보육사업을 비롯한 국비보조사업의 전반적인 규모 증가에 따른 반환금 규모가 증가할 것을 예상하여 증액 추계한 것임.
- 시·도비 반환 수입 관련하여, 2014년 결산 기준 시·도비 반환금 징수율이 66%에 그쳤던 점을 고려해 본다며, 보다 적극적인 회수 노력이 필요할 것임.

2) 공유재산 대부에 따른 세입조치 철저필요

- 공유재산 임대에 따른 '임대료 수입' 세입 내역은 총 3건 (남부여성발전센터 83만원,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사용료 4억 3,347만원, 여성플라자 임대료 1억2,315만원)이 편성됨.
- 공유재산에 대한 일정 공간을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사용·수익허가)에 따라 서울시장이 부과권자가 되어 부과하고 이에 따른 수입은 서울시에 세입조치 하도록 되어 있음.
-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소관 공유재산 내역은 총 39건¹⁾으로 보고되고 있고, 동 자료에 따르면, 일부 시설(예. 서남권 글로벌센터내 '온드림센터', 여성재단내 '시립다시함께센터' 등) 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조치가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동일 실·국내 목적사업이라는 이유로 세입 조치하지 아니하고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이는 동일 실·국내에서 세입과 세출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불필요한 조치라 생각할 수 도 있겠으나, 상기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과 「지방재정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총계주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 할 것인바, 이의 개선이 요구됨.

1) 토지등을 제외한 시설 기준임

- 참고로,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조 (실태조사)에 따르면,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 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 향후, 여성가족정책실에서는 소관 시설내 공유재산에 대한 현황파악 및 무상임대, 무단사용 등 관련 실태파악 등을 위하여 재산관리관과의 긴밀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해당 공유재산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2016 회계연도 세출 예산안 편성 개요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16년도 세출 예산안은 2조 1,760억 6,600만원으로, 2015년도 당초예산 2조 307억 2,600만원 대비 7.1% 증액된 수준이며, 2015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조 870억 2,100만원 대비 4.3% 증액된 수준임.

〈표 4. 2016 회계연도 세출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2015년 예산 (최종예산) ①	2016년 예산(안) ②	증감 ② - ①	증감율
(×647,029)	(×638,485)	(×△8,544)	4.3%
2,087,021	2,176,066	89,045	

나. 최근 5년간 세출 예산 변동추이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27조 4,531억원)의 7.93%에 해당하며, 이는 2014년의 세출예산 구성비 7.90%에 비해 0.3% 증가한 것임.

〈표 5. 최근 5년간 서울시 총예산 및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서울시 총예산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예산총액	서울시 총예산 대비율(%)	전년대비 증감율(%)
2012	22,275,627	1,223,420	5.5%	1.4
2013	23,789,044	1,851,749	7.8%	2.8%
2014	24,969,266	2,082,936	8.3%	1.0%
2015	26,411,590	2,087,021	7.9%	0.02%
2016	27,453,144	2,176,066	7.9%	0.30%

※ 사업비 및 부서운영비를 포함한 전체예산, 전년도 최종예산액 기준

※ 서울시총예산은 각 연도별 예산서(안)에 나온 전년도 최종예산 자료를 사용함

- 최근 5년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 예산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예산 총액 기준으로 볼 때, 2012년 1조 2,234억원이었던 것이 2016년에는 2조 1,760억원으로 증가하여, 동 기간동안 9,526억원이 증가함²⁾.
- 이는 2012년 대비 1.7배가 증가한 것이며, 동 기간 동안 서울시 총예산 규모가 1.2배 증가한 것에 비하면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의 신장율이 보다 큼.
- 또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규모를 서울시 총예산규모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로 살펴보면, 2012년 5.5%였던 것이 2016년에는 7.9%로 증가하여, 2.4% 가량 상승됨.

2)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은 2012년과 2013년에 급격하게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2012년부터 보육제도의 대상자가 확대되면서부터 그 예산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고, 2013년에는 전계층 무상보육실시에 따라 그 예산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임 (※ 2011년 9,355억원 => 2012년 1조 3,822억원 => 2013년 1조 8,777억원)

다. 2016 회계연도 세출예산 구조

- 여성가족정책실 세출 구조는 연례적으로 99.7% 이상이 사업비 예산으로 구성됨.

〈표 6.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구조〉

(단위 : 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	2015년도	2016년 예산안		
					예산액	2015년 대비	증감율 (%)
						증감액	
총 계	1,223,420	1,851,749	2,082,936	2,087,021	2,176,066	89,045	4.3
	100%	100%	100%	100%	100%		
사업비	1,220,307	1,849,640	2,079,708	2,084,323	2,169,733	85,410	4.1
	99.75%	99.89%	99.85%	99.87%	99.71%		
행정운영경비	620	673	670	609	621	12	2.0
	0.05%	0.04%	0.03%	0.03%	0.03%		
재무활동	2,493	1,436	2,558	2,089	5,712	3,623	173.4
	0.20%	0.08%	0.12%	0.10%	0.26%		

* ()안은 총계 대비율을 말함

라. 2016 회계연도 세출 예산안의 편성 방향

- 서울시에서 제시한 여성가족정책실 2016 회계연도 예산 편성방향은, ①튼튼한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가족지원 기반시설 조성, ②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확대 ③가족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서울 조성 ④외국인 주민과 함께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강화라는 크게 4개 분야를 제시하고, 이에 따른 세부내용은 아래 <표 7>와 같이 제시함.

<표 7. 2016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편성방향>

- 튼튼한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가족지원 기반시설 조성**
 - 여성유망직종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교육사업 추진
 - 일가족 양립지원을 위한 제2의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 직장맘 전용 고충상담 전화 개설 및 직장맘 지원센터 집중 홍보
 - '공예' 특화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조성('16년 준공) 및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 건립 추진
-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확대**
 - 국공립어린이집 +1,000 추진 박차, '16년 300개소 확충
 - 보육교사 격무부담 완화를 위한 보조교사, 대체교사 지원
 - 맞벌이 부부, 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보육 서비스 제공
 - 육아부담 경감 및 형평성 강화를 위한 차액보육료 지원
- 가족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서울 조성**
 - 서울가족학교를 통한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결혼·출산장려 인식개선
 - 아동복지에 대한 사전 예방적 서비스 확대 등 아동친화도시 로드맵 개발
-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강화**
 - 중국동포 고유문화 활용 등 단계적 지역발전 기반조성
 - 중국동포 역량강화 공모사업, 발전방안 용역 및 중국동포 문화저변 확대 등
 - 이주여성 취창업지원 등 외국인주민 맞춤형 정책지원
 - 외국인주민 인권 강화 및 인프라 확충

마.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 2016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은 아래 <표 8>와 같음.

<표 8. 여성가족정책실 부서별 예산편성 현황>

(단위: 백만원)

부서별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 예산안		
					예산(안)	증감액	증감율 (%)
총계	1,223,420	1,851,749	2,082,936	2,087,021	2,176,066	89,045	4.3%
	100%	100%	100%	100%	100%		
여성정책담당관	98,358	95,800	98,155	84,541	91,634	7,093	8.4%
	8.04%	5.17%	4.71%	4.05%	4.21%		
보육담당관	938,472	1,545,676	1,770,091	1,766,639	1,849,955	83,316	4.7%
	76.71%	83.47%	84.98%	84.65%	85.01%		
가족담당관	157,508	187,144	192,970	212,671	214,023	1,352	0.6%
	12.9%	10.1%	9.3%	10.2%	9.8%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8,433	21,742	20,847	22,381	19,643	- 2,738	-12.2%
	2.3%	1.2%	1.0%	1.1%	0.9%		
아동복지센터	649	1,387	873	789	810	21	2.6%
	0.1%	0.1%	0.0%	0.0%	0.0%		

* ()안은 총계 대비율을 말함

- 구체적으로, '보육담당관' 소관 예산은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예산의 85%(1조 8,499억원)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부서별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예산 비중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보육담당관'과 '여성가족정책담당관'은 전년 대비 소폭의 증가(각각 4.7%, 8.4% 증가) 세를 보이는

반면에,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전년대비 그 비중이 감소 (12.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³⁾.

- 한편,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정책사업 수는 총 136개로, 각 과별, 주요 증감 내역은 아래 <표 9>과 같음.

<표 9. 부서별 사업수 및 주요 증감현황> (단위: 개)

구분	'16년 정책 사업수				주요 증감사업 현황(5억 이상)
	총계	'15년 대비			
		증	감	동일	
전체	136	88	34	14	
여성정책담당관	47	31	10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사업 : 스페이스살림 건립 추진 19.7억,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설치운영 35억, 서울여성가족재단 운영지원 6.6억, 성매매피해여성 보호 및 지원 5억 - 신규사업 : 위기청소년 자립꿈터 설치 운영 17억 ○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심귀가 스카우트 5.3억, 노숙인시설 기능보강 16.8억
보육담당관	33	23	7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돌봄서비스 363억, 가정양육수당 13억, 누리과정보육료 114억, 어린이집 지원(보조) 13억, 시간제보육 운영지원(보조) 13억,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6억,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708억 ○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220억, 어린이집 기능보강(보조) 11억, 어린이집 기능보강(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 81억
가족담당관	39	26	11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지원 6억,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27억, 요보호 아동 그룹홈 형태보호 6.6억, 아동급식지원 21억,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14억, 아동친화도시 추진 5.5억 ○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4억,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15억, 위스타트 마을 운영지원 5.4억,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9.7억, 입양아동가족지원 6.9억, 퇴소아동자립형 그룹홈 운영지원 35억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5	6	6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문화가족 정착 및 자녀양육 지원 6.5억,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6.4억, 외국인지원시설 설치운영 5.1억
아동복지센터	2	2			

3) '가족담당관'의 경우 2015년 1월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기존의 아동청소년담당관 업무 중 아동분야 업무와 기존의 여성가족정책담당관실과 보육담당관실에 흩어져 있던 가족분야 업무가 가족담당관으로 통합함.

바. 국고보조 사업과 순수 시비사업 예산사업 비교

- 2016 회계연도 기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중, 국고 보조금 사업비와 순수 시비 사업비간의 예산 비율은 70.8% : 29.2%로 나타남.
- 다시말해, 여성가족정책실 사업 예산의 71% 가량은 국비 보조 사업으로서 법정 의무 준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 순수 서울시에서 가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의 규모는 약 29%에 이르는 것으로 볼 수 있음(아래 표 10).

〈표 10. 국고보조금 사업 및 순수 시비 사업의 예산 및 사업수 현황〉

(단위: 백만원, %, 개)

부서	국고보조 사업		순수 시비 사업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여성가족정책 담당관	35,927	15	54,229	30
보육담당관	1,394,399	10	452,896	21
가족담당관	96,144	20	116,153	17
외국인다문화 담당관	8,966	1	10,417	12
아동복지센터	602	1	-	-
총계	1,536,038	47	633,695	80
전체예산 대비율(%)	70.8%	37.0%	29.2%	62.9%

- 한편, 국비보조금 사업과 순수시비 사업을 사업수로 구분해보면, '16년 기준 총 127개 사업 가운데 국비 매칭사업은

총 47개이고, 순수 시비사업은 80개로 나타났음.

사.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

- 2016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가운데 100억원 이상 규모를 가진 사업은 총 15개로 나타남.
- 가장 큰 예산규모를 가진 사업은 국고보조사업인 ‘영유아 보육료(보조)’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총예산의 27%에 해당함. 다음으로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사업이 14.3%, ‘누리과정 보육료’ 사업이 13.3%, ‘보육돌봄서비스’ 사업이 8.7%,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이 7.6%,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사업이 6.8%, 어린이집 지원(보조)’ 사업이 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상 제시한 7가지 사업은 여성가족정책실 총 예산 대비 83.7%를 차지하고 있는데, 주로 무상보육 예산과 관련 있고, 또한 이에 파급되는 어린이집에 대한 인건비와 운영비 지원 및 보육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등 보육 예산에 해당함.

〈 표 11.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

(단위: 백만원, %)

연번	부서	사업명	2016년 예산	2015년 예산	전년대비 증감액	실 총예산 대 비율
1	보육담당관	영유아 보육료(보조)	587,849	596,920	- 9,072	27.0%
2	보육담당관	가정양육수당 지원	311,017	309,734	1,283	14.3%
3	보육담당관	누리과정 보육료	288,811	277,416	11,394	13.3%
4	보육담당관	보육돌봄서비스	189,634	153,356	36,277	8.7%
5	보육담당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165,410	94,650	70,760	7.6%
6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147,959	170,010	- 22,051	6.8%
7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지원(보조)	131,300	129,965	1,334	6.0% (누계 83.7%)
8	가족담당관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60,176	57,453	2,722	2.8%
9	가족담당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33,257	32,937	319	1.5%
10	가족담당관	아동급식지원	19,238	17,100	2,138	0.9%
11	여성정책담당관	스페이스살림건립추진(구대방동미군기지 이전부지매입)	16,652	14,680	1,972	0.8%
12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16,400	16,944	- 544	0.8%
13	가족담당관	한부모가족자녀 교통비 등 지원	15,064	16,570	- 1,507	0.7%
14	가족담당관	아이돌보미사업 운영	13,409	13,166	243	0.6%
15	여성정책담당관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1,360	11,722	- 362	0.5%

아. 예산안 총괄 검토의견

1) 편성방향에 부합하는 주요사업 강화 필요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여성유망직종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육 사업 추진 관련 사업예산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
- 가족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서울조성 방향을 뒷받침 할 세부사업 및 예산 미흡
-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는'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강화 방향, 그 실질적 사업내용 미흡

■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편성방향 개요

- 2016년도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안 편성 방향은 앞서 <표 7>와 같이 제시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편성방향을 뒷받침하는 사업의 내용과 예산안의 마련이 다소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향후 편성방향에 따른 주요 사업 내용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함

■ 여성유망직종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육 사업 추진 관련 사업예산, 오히려 전년보다 감소

- 우선, '튼튼한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가족지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여성유망직종 직업교육 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육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 이를 추진하기 위한 관련 사업은 기존의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사업 및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사업',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지정운영' 등 5개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이들 사업의 2016년도 예산안의 경우 2015년과 비교해볼 때 각 사업별로 평균 2.8%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든든한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가족지원 기반시설 조성

- 여성유망직종 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교육사업 추진
- 일가족 양립지원을 위한 제2의 직장맘지원센터 설치
- '공예' 특화 북부여성창업플라자 조성('16년 준공) 및 여성가족복합시설 스페이스살림 건립 추진

- 다만, '여성 더 좋은 일자리 활성화 지원' 사업의 경우, 2015년 대비 그 예산액이 3억5천만원 가량 증가했다고 할 수 있으나, 위에서 제시한 여성유망직종 직업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맞춤형 교육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증액이라기 보다는 일자리사업에 대한 '사업홍보비' 또는 '공예창업/판로 확대' 관련 사업이라는 점에서 세부 편성방향과 부합성이 다소 떨어지는 측면이 있음.

〈표 12. '든든한 여성일자리 창출 및 여성가족지원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편성된 세부사업 예산 내역〉 (단위: 천원)

사업구분	사업명	2015년	2016년	증감	증감율
계속사업	여성발전센터 운영강화	7,748,391	7,538,465	-209,926	-2.7%
기존사업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5,008,800	4,879,800	-129,000	-2.6%
계속사업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1,721,599	11,359,608	-361,991	-3.1%
계속사업	여성 더 좋은 일자리 활성화 지원(구 여성일자리 창출)	1,711,750	2,069,000	357,250	20.9%
합계		26,190,540	25,846,873	-343,667	

■ ‘가족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서울조성’ 방향을 뒷받침 할 세부사업 및 예산 미흡

- ‘가족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서울 조성’을 위하여 ‘서울가족학교를 통한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비롯해 아래와 같이 구체적 세부 편성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가족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서울 조성

- 서울가족학교를 통한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및 결혼·출산장려 인식개선
- 아동복지에 대한 사전 예방적 서비스 확대 등 아동친화도시 로드맵 개발

- 그런데, 이들 세부 편성방향을 설명할 수 있는 2016년 실제 예산 증액액은 총 11억원에 해당하고 있는바,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전체 예산액(2조 1,760억원),과 2016년 증액액(2016년 증액 890억원)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볼 때, 서울시에서 제시한 상기 세부 편성방향을 뒷받침하는 사업의 내용과 예산안이 충분히 마련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표 13. ‘가족이 행복하고 아이들이 밝게 자라는 서울 조성’을 위해 편성된 세부사업 예산 내역〉 (단위: 천원)

사업구분	사업명	2015년	2016년	증감	증감율
계속사업	가족 학교	408,000	704,000	296,000	72.5%

	운영지원				
기존사업	아이돌보미 사업 운영	13,165,986	13,408,776	242,790	1.8%
계속사업	저출산극복 인식개선	63,085	82,437	19,352	30.7%
신규사업	아동친화도시 추진		551,000	551,000	100.0%
합계		13,637,071	14,746,213	1,109,142	

■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강화' 방향, 그 실질적 사업내용 미흡

- 덧붙여,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강화'하고자 아래의 세부편성 내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강화

- 중국동포 고유문화 활용 등 단계적 지역발전 기반조성
 - 중국동포 역량강화 공모사업, 발전방안 용역 및 중국동포 문화저변 확대 등
- 이주여성 취창업지원 등 외국인주민 맞춤형 정책지원
- 외국인주민 인권 강화 및 인프라 확충

-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전체 예산규모가 2015년 대비 12.2%(27억원)이 감액 된 가운데, 2016년 예산편성방향을 뒷받침하는 주요 사업의 예산 증액이 총 3억 6천8백만원에 그치고 있는바,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제시한 2016년 예산편성방향은 전반적으로 그 내용이 사업예산으로 충분히 연결되지 못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4)

4) 전년대비 감액 사유의 일정부분이 시설확충비용 감소에 따른 감액인 점을 고려하고 보더라도 그러함.

〈표 14. ‘외국인 주민과 함께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 지원 강화’을 위해 편성된 세부사업 예산 내역〉

사업구분	사업명	2015년	2016년	증감	증감율
계속사업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구 중국동포 자립지원을 위한 역량강화 지원)	71,500	390,000	318,500	445.5%
계속사업	이주민 인권보호 및 생활지원	150,000	200,000	50,000	33.3%
합계			590,000	368,500	

2)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의 다각화 및 세분화 필요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136개의 세부사업, 단지 10개의 성과지표만 사업수행 결과 측정
- 제한적 세부 성과지표문제 및 목표달성여부 측정지표의 미흡 개선 필요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의 다각화 및 세분화 필요

■ 2016년 성과계획서 개요

- 개정된 「지방재정법」 제5조⁵⁾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2016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토록 의무화함으로써, 금번 2016년 예산안 심의를 위해 성과계획서가 처음으로 제출된 것임.
- 이러한 예산의 성과관리체계 구축은 세출구조조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효율적인 집행과 성과의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음.
- 이런 점에서 보면, 성과계획과 예산간의 보다 긴밀한 연계를 위해 성과계획서상 성과목표와 정책사업 예산을 연계하여

5) 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활동의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요 재정사업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④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편성토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단위사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성과지표의 구성이 매우 중요한 요소라 할 것임.

- 그런데, 금번에 제출된 2016년 여성가족정책실 성과계획서를 살펴보면, ‘여성, 가족에게 희망을 주는 서울’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5개의 정책사업 목표를 제시하고, 136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단지 10개의 성과지표만으로 사업수행 결과를 측정하고 있음.

〈 표15. 여성가족정책실 2016년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16년 목표치	지표종류		예산액 (백만원)
			정량/ 정성	성격	
					2,169,733
사회참여 확대, 안전한 복지도시 조성을 통한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여성일자리 지원 (지원 수)	20,040	정량	결과	90,156
	안심택배 점유율(%)	56	정량	결과	
보육의 공공성과 품질제고를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개소수(개소)	300	정량	결과	1,847,295
가족기능 강화를 통한 행복한 가족 조성 및 아동복지서비스 증진	가족학교 교육 참여 인원수(인원수)	7,900	정량	결과	212,297
	아동학대 관련시설 운영, 확충수(시설수)	11	정량	결과	
다문화 건강가정 조성, 외국인 생활지원 강화를 통한 글로벌도시환경 및 선진 다문화사회 조성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지원(명)	24,000	정량	결과	19,383
	외국인 생활만족도 (점수(5점 만점))	3.8	정량	결과	
	글로벌센터 외국인서비스 건수(건)	110,000	정량	결과	
아동복지 서비스 증진	아동상담건수(건)	6,200	정량	결과	603

- 또한, 성과관리 지표의 내용적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해당 단위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에는 매우 제한된 지표로 구성된 측면이 있음. 이는 성과주의 예산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되는 사항임.

■ 정책사업목표별 성과지표의 다각화 및 세분화 필요

- 예를 들어보면, ‘사회참여 확대 및 안전한 복지도시 조성을 통한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이라는 정책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지표는 ① 여성일자리 지원과 ② 안심택배 점유율로 제시하고 있음.
- 그런데,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양성평등의 실효성을 가늠하려면 ‘여성일자리 지원’이라는 공급자 지원 횟수를 측정하는 것 보다는 실지로 ‘여성일자리 제공 또는 확보’라는 보다 구체적이고 성과위주의 지표가 측정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안전한 복지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복지를 증진하고자 제시된 성과지표는 ‘안심택배 점유율’로, 실제 택배함의 이용율이 54%에 이르게 하겠다는 계획임. 그런데 실제 안심택배함 점유율이 안전한 복지도시를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 지표라고 보기에는 그 인과성 등 사업의 효과측정을 위한 다소 제한적인 지표라는 점에서 그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 다른 예로, ‘보육담당관’내 예산사업수는 총 33개로 구성되고, 이에 따른 총 예산규모는 1조 8,499억원을 차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성과지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수 300개소’라는 단일 측정 지표로 매우 단순화 되어 있음.

- 그러나, 현재 어린이집 운영의 80% 가까이가 민간에서 운영되고 있고, 이의 지원을 위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등 각종 시책사업이 운영·지원되는 점을 감안해본다면, 상기 지표는 ‘보육의 공공성과 품질제고를 통해 아이가 행복하고 부모는 안심하는 보육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를 전반적으로 측정하기에는 매우 제한적인 측면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금번 2016년 여성가족정책실 성과계획은 이상과 같이 정책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성과지표가 매우 제한적이거나 정책사업목표 달성여부의 구체적 지표로서의 한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성과계획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성과지표의 다각화 및 세분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 개선 필요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2016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복지본부 시설대비 87.4% 그쳐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 노력 및 2016년 추가 확보 필요(4억원)
- 현장의견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합리적 호봉체계 도입 필요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향조정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2016년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복지본부 시설대비 87.4% 그쳐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그동안 점차로 상승되어 왔으나, 2014년 보건복지부 조사자료에 따르면, 여성복지시설(법적 사회복지시설 기준) 종사자의 보수 총액은 보건복지부 소관 유사시설 대비 82.5% 수준에 불과하고, 거의 모든 직종의 보수 수준이 보건복지부 소관시설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됨⁶⁾.
- 금번 서울시 2016년 여성복지시설⁷⁾ 종사자 인건비에 대한 예산은, 중앙정부 내시액이 2015년 대비 3% 일괄 인상되면서, 서울시의 관련 예산도 그 수준만큼 인상·편성하고, 여기에 서울시 차원의 호봉제도 도입을 위한 추가분을 편성 함.

6) 보건복지부 2014

7)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21개소),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14개소),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0개소), 이주여성 지원시설 (7개소)

-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안 기준 서울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복지본부 시설대비 87.4% 그쳐 여전히 유사시설과 임금 격차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임.
- 이렇듯, 유사시설 종사자간 임금격차는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와 잦은 이직으로 이어져 시설운영의 안정·전문성 확보에 한계로 작용하고 있는바, 유사 복지시설 종사자와의 보수 격차 해소하고, 전문인력 확보 및 종사자의 장기 근무를 통한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서는 여성가족부 관련 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 임금수준의 단계적 상승 및 각종 수당 지급 등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서울시 노력 및 2016년 추가 확보 필요(4억원)

- 이와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타 복지시설에 비해 열악한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을 서울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도달 시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으로,
 - 2015년에는 89%, 2016년에는 90%, 2017년에는 100%에 도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2015년부터 관련에

산을 확보했고,

- 2016년에도 이의 예산확보를 위해 전년대비 12%를 인상하여 아래 <표 16>와 같이 88억 2,900만원을 편성(복지본부 대비 87.4%) 함.

<표16.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관련, 2016년 예산(안)>

(단위: 개소, 명, 백만원)

구 분	개소	인원	2015 예산	2016 예산(안)	증감
계	62	263	7,617	8,829	1,212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21	81	2,308	2,702	394
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	14	48	1,287	1,653	366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20	105	3,239	3,492	253
이주여성 지원시설	7	29	783	982	199

<표. 17. 시설별 인건비 기준내역 비교>

구분	여성복지시설		복지본부소관 사회복지시설	비고
	2015 적용기준	2016 반영안		
본봉	○	○	○	
기말수당	200%	○	○	기본급*400%
명절휴가	X	○	○	기본급*200%
정액급식비	X	X	○	월100천원
관리자수당	X	X	○	월200천원
가족수당	X	X	○	배우자 월40천원 기타가족 월20천원
연장근로수당	X	X	○	10시간
정근수당	1회 (50~100%)	X	X	
가계지원비	2회(100%)	X	X	
최고호봉인정	10호봉	11호봉	31호봉	

- 그러나, 동 예산은 당초 목표로 했던 90%까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87.4%에 그치고 있는바, 당초 계획 90%에 도달(총 92억 3,800만원 소요)하기 위해서는 4억원 가량의 추가 편성이 필요한 상황임.

■ 현장의견 등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한 합리적 호봉체계 도입 필요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 관련하여, 서울시에서는 종사자의 호봉체계를 도입하고자 2015년부터 이의 적용을 시도하였으나, 2015년에는 결국 호봉체계를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이에 2016년에는 완전한 호봉체계를 도입하고자 계획 중임.
- 그런데, 이처럼 그동안의 총액급여 방식을 호봉체계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호봉체계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현장의 불만들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 이에 대한 주요 내용은, ①각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호봉산정 문제와 ②호봉이 부분적으로 인정되는 문제 등이 주요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 따라서, 서울시가 추진 중 인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보다 긍정적으로 실현되기 위

해서는 실제 현장의 요구에 대한 합리적이고 타당한 근거와 기준으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만들어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짐. 이를 위해 사전 현장 조사 및 의견조사 등을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상향조정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대를 위한 적극적 노력 필요

- 여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관련된 예산은 주로 국비와 시비 50:50 매칭으로 이루어짐.
- 그러므로 종사자 인건비가 상향조정 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는 중앙차원에서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종합적인 방안(예. 시설별 종사자의 목표임금 수준 설정 등 중장기적 계획 수립, 시설종사자의 임금 가이드라인 마련과 호봉체계 도입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는바, 이의 개선을 위해 대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정책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4) 신규사업의 부적절한 사전 업무협약 문제 개선 필요 및 구체적 세부사업 명료화 필요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부적절한 시설운영권 사전협약 및 기부체납 조건의 부적절 문제
- 구체적 세부사업의 미흡 문제

■ 2016년 신규사업 현황

○ 주민참여예산을 제외한 2016년 신규예산 사업으로 편성된 사업은 총 4개 사업으로, 예산규모는 25억 262만원임.

- 이는 2015년 신규사업 308억 9,959만원(총 10개 사업)과 비교해 볼 때, 2016년에는 신규사업의 규모와 사업수에서의 증가폭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신규사업별 구체적 내역은 <아래 표 18>과 같음.

<표 18. 신규사업 내역 > (단위: 천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내용
합계			2,502,627	
1	여성정책담당관	위기청소년 자립꿈터 설치 운영	1,700,000	○ 사업내용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자립복합공간 건립 ○ 추진방법 : 시-부지매입, (주)벽산-건립비용 후원, 새날에오면:건립 및 기부체납, 건물 관리 및 운영
2	보육담당관	육아종합지원센터 기능강화사업 시범운영	200,000	○ 어린이집 지원기능 강화를 위한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신규사업 발굴
3	보육담당관	보육포털사이트 유지관리	51,627	○ 보육포털시스템 무상하자보수기간 종료에 따라 유지보수비용 발생
4	가족담당관	아동친화도시 추진	551,000	○ 사업내용 - 아동친화도시 로드맵 연구용역 - 아동친화도시 인식개선 및 정책박람회 - 아동학대 예방, 홍보, 상설교육장 운영 - 아동친화도시 추진 자치구 포럼 등

*상기 신규사업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제외한 것임

■ 2016 신규사업, 부적절한 시설운영권 사전협약 및 기부채납 조건의 부적절 문제, 구체적 세부사업의 미흡 문제 등 발견

- 세부사업별 검토의견에서 후술하겠지만, 금번 2016년 신규사업 가운데, 일부 사업에서는 부적절한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사전 업무협약을 한 사례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세부사업이 미흡한 점 등이 주요한 지적 되며,
 - 이런 점에서 신규사업을 계획함에 있어 부적절한 업무협약 관계는 반드시 지적·개선이 필요하며,
 - 덧붙여, 신규사업 추진을 위한 계획수립 등 면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해 보임.

5) 민간이전 경비 증가에 따른 철저한 성과관리 등 효율적 보조금 관리 필요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2016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이전 경비, 약 2,300억원에 달해
- 민간이전 경비, 전년대비 16.3% 증가 및 매년 10% 이상씩 증가추세
- 민간이전 경비, 여성가족정책실 전체예산의 10.1%로 보육료 예산을 제외한 실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
-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성과평가 기준 강화 필요
- 일몰제 적용 원칙 엄격히 적용 및 의회 보고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 필요

■ 민간이전 경비 관련 예산 개요 및 현황

- 민간이전 경비는 민간이 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경비를 말함.
-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기준」에 따르면, 이러한 민간이전 경비의 “동일 사업에 지원 기간이 3년이 지나면 일몰제를 적용하여 지원 중단을 원칙으로 하되, 성과평가를 통하여 지속 지원여부를 판단한 후 보조”하도록 하고 있음.
- 2016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이전 경비(민간경상보

조금, 민간행사보조금, 민간위탁금,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에 해당하는 예산 규모는 2,201억 6,730만원으로, 2015년 대비 308억 3,622만원이 증가하여, '15년 대비 16.3%가 증가함.

- 또한, 민간이전 경비는 매년 약 10%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표 19. 부서별 민간이전 경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부서별	예산 과목	2014년	2015년	2016년	'15년 대비 증감액	'15년 대 비 증감률 (%)
여성가족 정책 담당관	민간이전	44,109,853	47,483,436	49,829,396	2,345,960	4.9%
	소계	44,109,853	47,483,436	49,829,396	2,345,960	4.9%
보육 담당관	민간이전	10,441,915	10,773,345	36,824,170	26,050,825	241.8%
	소계	10,441,915	10,773,345	36,824,170	26,050,825	241.8%
가족 담당관	민간이전	96,776,830	113,478,991	117,218,219	3,739,228	3.3%
	소계	96,776,830	113,478,991	117,218,219	3,739,228	3.3%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민간이전	17,835,973	17,595,308	16,295,517	-1,299,791	-7.4%
	소계	17,835,973	17,595,308	16,295,517	-1,299,791	-7.4%
총액		169,164,571	189,331,080	220,167,302	30,836,222	16.3%

■ 민간이전 경비, 여성가족정책실 전체예산의 10.1%로
보육료 예산을 제외한 실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민간이전 경비가 차지하는 예산비율은 전체 세출예산(사업비 기준, 2,169,733백만원) 대비 약 10.15% 가량인데,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의 83%이상이 수혜자에게 직·간접적으로 전달되는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이거나,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비 또는 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지원되므로⁸⁾, 이의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17%에 해당하는 여성가족정책실 예산 가운데 10.15%의 예산이 민간이전의 형태로 집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대부분이 민간이전 경비를 통해 집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임.

■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철저한 성과관리 필요

- 여기에 덧붙여, 기초자치단체를 거쳐 민간으로 배분되는 각종의 예산(예. 자치단체경상보조 등) 및 민간자본이전비 예산까지 더한다면 그 규모는 훨씬 더 커진다고 할 수 있고,
- 이러한 민간에 이전되는 경비는 앞으로도 중앙 및 지방정부의 복지 정책이 확대됨에 따라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민간이전경비의 철저한 관리가 더욱 중요해진다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서울시에서는 민간이전 경비에 대한 보다 면밀한 성과 평가 기준 강화를 통한 효율적 예산의 편성 및 운용이 요구되어짐.

8) <표 0> 100억원 이상 주요 사업 내역 참조

-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기준에 따른 일몰제 적용 원칙도 엄격히 적용하여 이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예산 심의시 보다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등 철저한 성과관리를 위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됨.

6) 기능보강사업에 대한 중장기적 지원 계획 필요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설/기관에 최근 3년간 시설 기능보강비 368억원 집행
- 노후화된 소관 시설/기관에 대한 중장기적 기능보강 계획 필요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설/기관에 최근 3년간 시설 기능보강비 368억원 집행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시설/기관에 대한 최근 3년간의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총 2,009개 시설에 368억원의 기능보강비가 지원된 것으로 나타남⁹⁾.

- 이는 1개 시설당 평균 1,836만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임.

〈표20.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연도별 기능보강 개소수 및 예산액 총괄표〉

(단위: 천원)

구 분	여성정책담당관 (여성복지/성매매/인력개발)		보육담당관		가족담당관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총계	
	개소수	예산액	개소수	예산액	개소수	예산액	개소수	예산액	개소수	예산액
계	65	835,773	1,885	18,285,537	59	17,773,196	-	-	2,009	36,894,506
2015	25	559,749	839	4,070,147	8	4,740,380	-	-	872	9,370,276
2014	21	156,788	454	11,142,341	13	3,584,980	-	-	488	14,884,109
2013	19	119,236	592	3,073,049	38	9,447,836	-	-	649	12,640,121

*자료출처: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9) 시립시설만을 대상으로 했을 경우, 총 80개 시설에 108억원이 지원되었고, 이는 1개 시설당 평균 1억 4,963억원 가량이 지원된 것임 (자료출처: 2015년 서울시행정사무감사 자료)

■ 노후화된 소관 시설/기관에 대한 증장기적 기능보강 계획 필요

- 이처럼 시립시설 기능보강비가 적지 않은 이유는 시설들의 노후화가 점차적으로 진행됨으로써, 노후 된 시설 등의 개·보수를 위한 예산집행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 때문임.
- 여성노숙인 시설(영보자애원, 여성보호센터)을 예를 들어 보더라도 이들 각 시설은 설립된 지 30년 또는 17년 이상 되어 노후화가 점점 진행되고 있고, 상기 시설들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비는 아래 <표 2-19>와 같이 4개년간 총 57억원에 이르고, 연평균(최근 4개년 평균) 14억 원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고 있음.

<표 21. 여성노숙인 시설 연도별 기능보강 추진 실적 >

연도	예산총액	구체적 내용
2012년도	746,540 천원	· 영보자애원 : 냉장 냉동고 교체 140,000천원 · 여성보호센터 : 담장 등 개보수 공사 : 606,540천원
2013년도	2,791,460천원	· 영보자애원 : 생활관 환경개선 공사 : 2,345,734천원 · 여성보호센터: 전기배전공사 392,734천원, 생활관 방수공사 : 53,000천원
2014년도	383,000천원	· 영보자애원 : 자동보일러 설치 : 190,000천원 · 여성보호센터 : 엘리베이터 설치 : 193,000천원
2015년도	1,779,428천원	· 영보자애원: 시설보수보강 (별관 및 기숙사 환경개선 공사) 및 장비 보강 (의료용 침대구매) 1,573,208 천원 · 서울여성보호센터 시설보수보강(시설외벽 누수공사) 206,220

- 또 다른 사례로, 아동양육시설의 경우 민간에 의해 설립된 시설이나 그 운영에 대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

되어 있는바, 이에 따라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한 기능보강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고, 서울시 관할 아동양육시설에 최근 5년간('12~16년(안)) 지원(및 예정)인 기능보강사업비 총액은 214억원 7,1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됨.

〈표 22. 아동양육시설 연도별 기능보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안)	총계
지원 개소수	5개소	33개소	5개소	3개소	-	
예산	2,968	8,403	3,133	2,484	4,483	21,471

*자료출처: 서울시 자료 재분류

- 이런 점에서, 향후 서울시에서는 관할 기관/시설의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효율적 예산운용 뿐만 아니라 노후화된 복지 시설에 대한 계획성 있는 예산편성·집행을 위하여 중장기적 기능보강 계획을 수립·실행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7)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내실 운영 필요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16년에는 13개 사업, 8억 5,000만원 편성
- 지역간 · 기존사업간 형평성 문제 및 유사중복 사업 문제 여전
- 사업 내용 평가를 통한 사업 효과성 피드백 체계 마련 필요 등 운영 내실화 필요

■ 주민참여 예산 현황

- 2016년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은 총 359개 사업으로 예산 규모는 총 496억원이 편성되었고, 이 중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주민참여예산은 13개 사업에서 총 8억 5,400만원이 편성됨.

〈표 23. 주민참여예산 사업별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부서	사업명	예산(안)	사업개요	부서 의견
	총계	13개 사업	854		
1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428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등 11개 자치구 ○ 사업내용 : 여성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한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 비상벨·LED 보안 센서등·안내판 부착, 안전교육 등 추진	일부 적절
2	외국인 다문화 담당관	결혼이민자 창업 및 취업 지원사업	15	○ 수공예품 제작 및 판매를 통한 결혼이민자 창업 및 취업지원 -결혼이민여성 대상 직업훈련교육(이론교육) -수공예품 제작훈련 교육(실기교육) -프리마켓을 통한 판매활동 지원	일부 적절
3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 교육지원	50	○ 대상 : 마포구 거주 여성 40명 ○ 사업내용:여성일자리 교육프로그램 운영 / 현장지도점검 및 결과(성과) 보고회	적절
4	여성정책담당관	찾아가는 성, 가정폭력예방	20	○ 대상 : 500명(서초구 관내 학교, 노인정, 여성회관등)	적절

	관	교육 및 캠페인		○ 사업내용 : ①예방교육②캠페인(3회)	
5	여성정책담당관	여성일자리 창출을 위한 바른먹거리 실천을 위한 지역교육	19	○ 대상 : 바른 먹거리 강사활동을 희망하는 서초구 여성 ○ 사업주체 : 서초구립여성회관 ○ 사업내용 : 바른먹거리강사 양성교육, 교육기관 순회교육, 마을 방과후 학교 방문 교육(방학중),바른먹거리 지역 캠페인	적절
6	보육담당관	영유아 아동 발달촉진사업 및 양육환경 개선사업	50	○ 요보호 아동에 대하여 발달촉진교사 파견 및 수업 진행	적절
7	보육담당관	안심하고 믿고 보내는 쾌적한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	40	○ 새싹어린이집, 벚골어린이집에 대한 실내외 환경개선	적절
8	보육담당관	어린이집 내 다문화 공유 사업	11	○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다문화 가정의 생활적응을 지원함	적절
9	보육담당관	장애아동 놀이터 및 독서쉼터 만들기	100	○ 장애아동이 함께 신체활동을 즐길수 있도록 놀이터 환경조성 및 독서쉼터 마련	적절
10	보육담당관	노후 청구어린이집 환경 개선	95	○ 청구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선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	적절
11	가족담당관	아동대상 심리 프로그램	13	○ 지원대상 : 금천구 지역 아동 ○ 사업위치 : 혜명지역아동복지센터 ○ 사업내용 : 금천구 지역아동의 사회성 향상을 위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적절
12	가족담당관	아빠가 만들어가는 가족 이야기	8	○ 지원대상 : 송파구 관내 거주 가족 ○ 운영기관 : 송파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내용 : 다양한 부자 프로그램 운영	적절
13	가족담당관	“우리마을 힐링 카운슬러” 주민상담 교육지원	5	○ 지원대상 : 영등포구 구민 ○ 운영기관 : 영등포구(건강가정지원센터) ○ 사업내용 : 가족, 이웃의 문제 및 고민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카운슬러 양성	적절

■ 연도별 주민참여 예산 편성 및 운영 추이

○ 주민참여예산은 2013회계연도를 시작으로 예산에 반영되기 시작하여 금번 '16년 예산은 4년차를 맞이하고 있음.

- 시행 첫해의 총 사업수는 7개였다가, 연도별로 점차로 늘다가 '16년에는 13개로 늘어남.

- 반면에, 예산규모에 있어서는 '13년 첫해에 12억 8,800만원이었던 것이, 2014년 16억 5,000만원, 2015년 19억 3,500만원으로 편성되었다가, '16년에는 8억 5,000만원으로 줄어드는 추세로 나타남.
- 이는 제도 시행 초기였던 '13년 당시에는 시설 설치 관련 사업이 상당수를 차지했던 것이 점차로 소규모 프로그램 단위사업으로 변화하는데 기인한 것이라 할 수 있음.

〈표 24. 연도별 주민참여 예산 편성 및 운영 추이〉

(단위: 개, 천원)

부서	2013		2014		2015		2016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사업수	예산액
여성정책담당관			4	340,000	2	70,000	4	517,000
보육담당관	2	250,000	3	760,000	10	1,335,000	5	296,000
가족담당관	4	888,000	2	80,000	5	316,000	3	26,000
외국인다문화담당관	-	150,000	4	470,000	7	214,000	1	15,000
합계	7	1,288,000	13	1,650,000	24	1,935,000	13	854,000

■ 자치구별, 연도별 주민참여 예산 편성 현황

○ 연도별 자치구별 주민참여예산(안) 현황은 아래 <표 25>과 같음.

<표 25. 연도별 자치구별 참여예산 편성 내역>

(단위: 천원)

자치구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총계	7건	13건	24건	13건
강서구				1(보육)
강남구		1(여성)		1(보육)
강동구		1(가족), 2(외국인다문화)	1(가족)	
강북구	1(보육)		1(가족)	
관악구		1(보육)		1(보육)
광진구		1(보육)	1(보육), 1(외국인다문화)	
구로구	1(외국인)		1(보육), 1(외국인다문화)	
금천구			2(외국인다문화)	1(가족)
노원구			1(가족), 1(보육)	
도봉구				1(보육)
동작구			2(외국인다문화)	
동대문구			1(여성)	
마포구			1(보육)	1(여성)
서대문구			1(보육)	
성동구		1(가족), 1(외국인다문화)	2(보육)	
서초구		1(여성), 1(외국인다문화)		2(여성)
성북구			2(보육), 1(외국인다문화)	
송파구	3(가족)		1(여성)	1(가족)
양천구		1(여성)		
은평구	1(보육)			
용산구				
영등포구		1(보육)	1(보육)	1(가족)
종로구			2(가족)	
중구				1(보육)
종랑구				
기타(시민)	1(서울시)	1(서울시)		2(서울시)

■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사업 내용 평가를 통한 사업 효과성 피드백 체계 마련 필요 등 운영 내실화 필요

-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시행 4년차를 맞고 있으나, 각 사업에 대한 효과성 등의 측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참여예산사업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이에 대한 답변으로 서울시에서는 “13년, '14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평가는 주민참여예산사업이 그 자체 취지상 시민 제안·투표 선정에 의한 단년도 사업 등의 사유로 실시되지 않았으며, '15년은 주민참여예산 관련 총괄부서인 재정관리담당관에서 자체 모니터링 결과 사업목적 외 집행사업 등에 대하여 11월말 평가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음¹⁰⁾.
- 이처럼, '15년 주민참여예산에 대하여는 재정관리 담당관을 통해 ‘사업목적 외 집행사업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나, 이는 예산 집행내역에 대한 단순한 지도·감독 또는 이미 집행된 예산에 대한 단순 관리 조치에 그친다고 할 것임.
- 그러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당초 취지가 주민의 손으로 직접 시 행정에 참여하여 보다 현장중심적인 정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 본다면,

10) 자료출처: 2015년 여성가족정책실 행정사무감사 자료

- 주민참여방식의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실제 효과성 등을 충분히 검증하는 등 주민의 제안 아이디어가 실제 얼마나 애초 사업취지에 부합하게 잘 집행되고 의미 있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주민을 위한 보다 더 발전적인 정책 사업으로 거듭나도록 그 사업내용에 대한 철저한 평가가 수반되어, 이를 다시 서울시 정책사업으로 피드백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이를 위해서는 실국단위에서 해당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내용 평가를 통한 피드백 체계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2016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특징 및 한계

: 지역간· 기존사업간 형평성 문제 및 유사중복사업 문제 여전

-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사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주로 ①여성 및 결혼이민자 등의 취·업 및 창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비와 ②다문화 및 가족 또는 아동 대상 각종 분야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비, 그리고 ③노후화된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비 예산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음.
- '13년 예산부터 도입된 주민참여 예산사업에 대하여,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사업의 문제 등의 지적과 보다 실효성 있는 계속 사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안된 바 있음.

- 그럼에도 금번 2016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의 경우, 분야별 각종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업은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의 문제가 여전히 지적되며,
 - 자치구를 통해 서울시로 예산신청을 해야 하는 사업들이 주민참여의 형식으로 이용되는 문제 등 지난 3년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던 사업들이 금번 예산안에도 동일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세부사업별 검토의견 참조).

- 따라서, 주민참여 사업 편성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며,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해당 실국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 구축을 통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내실적 운영 및 주민참여사업 취지의 극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8) 어린이집 지도·감독의 효율성 강화 필요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관내 어린이집 지원비 한해 7,515억원(2014 집행기준) 지원
- 관내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5곳 중 1곳이 위반시설로 적발
- 어린이집 지도·감독 체계의 효율성 강화 필요
-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관리시스템 의무가입으로의 전환 필요

■ 관내 어린이집 지원비 한해 7,515억원(2014 집행기준) 지원,

- 서울시 관내 운영중인 어린이집은 2015년 9월 현재, 총 6,618개소로, 이 가운데 국공립은 13.4%, 민간은 33.6%, 가정은 47.4%를 차지하고 있음.
- 이들 각 유형별 어린이집에 지원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 7,515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됨.

〈표26. 2014년 민간보육시설 지원 세부내역〉 (단위: 백만원)

자 치 구	계		민간		가정		국공립	
	개소수	지원액 (국시구비)	개소수	지원액 (국시구비)	개소수	지원액 (국시구비)	개소수	지원액 (국시구비)
계	6,579	751,571	2,416	304,568	3,271	221,640	892	225,363

* 자료출처: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 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5곳 중 1곳이 위반시설로 적발

- 한편, 어린이집에 대한 연도별(2013~2014년) 지도·점검 결과를 살펴보면, 점검시설개소수 대비 위반시설 비율은 21%로, 5곳 중 1곳 이상이 위반시설로 적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27. 최근 2년간,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따른 적발유형별 현황〉

연 도	점검시설 (개소)	위반시설 (개소)	위반시설 비율	적발 유형별(건)				
				계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교직원	안전위생
2013년	4,723	1,039	22.0%	3,687	875	1,316	622	874
2014년	5,096	1,034	20.3%	2,664	898	802	361	603

* 자료출처: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 어린이집 지도·감독 체계의 효율성 강화 필요

- 2013년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어린이집은 명실 공히 공공 보육기관으로 거듭남으로써, 공보육기관으로써의 책임감과 공공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보다 중요해졌다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현재 어린이집 지도·감독에 관한 법적 근거는 「영유아보육법」 제41조(지도와 명령)¹¹⁾에 따른 것으로, 현재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복지부

11) 제41조(지도와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및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및 서울시(자치구 포함)에 의해 다음 <표 28>에 해당하는 각종 지도·감독을 받고 있음.

<표 28. 서울시 어린이집 각종 지도·감독 현황>

구분	지도·점검	평가인증	부모 모니터링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
주체	보건복지부, 서울시 및 자치구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서울시
수행기관	서울시, 자치구	한국보육진흥원	자치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수탁)
분야	운영일반, 재무회계, 종사자 관리, 보육료 등 수납, 건강·급식·위생·안전 분야 등에 대한 법규위반 사항	보육과정 ¹²⁾ (보육환경, 건강, 안전, 보육과정, 상호작용, 운영관리)	건강, 급식, 위생, 안전 등	회계 및 시설운영(안전, 급식, 위생, 건강 등)
주기	매년(정기 및 수시)	3년	매년(연간 4,000개소 내외)	3년
구성	공무원	보육교사 유경험자(석사 또는 학사 등)	부모 및 보육전문가(구별 10명, 전문가 5명 + 부모 5명)	보육교사 유경험자(석사 또는 학사 등)
비고	의무	신청	의무	의무
도입		2005년	2013년	2013년

* 이밖에 집단 시설 식품위생검사(주로 여름/자치구 식품위생과), 소방검사(소방서), 세무조사(자치구 세무조사), 설치물 조사(자치구 건축과), 노무관리(지방노동청) 등의 조사가 일부 시행됨. 그리고 구립어린이집의 경우 자치구 감사과 감사가 시행되기도 함.

* 자료출처: 여성가족재단 의원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자료

○ 무상보육 확대에 따른 보조금 등에 대한 투명한 시설운영을 위한 철저한 지도·감독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할 것임.

- 특히, 앞서 살펴보았듯이,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으로의 예산

12) 평가인증 어린이집은 인증기간 동안 자체점검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차별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 매년 1회 정해진 기간 내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 입력·제출, 이를 시행하지 않을 시 평가인증 취소

지원이 한해에 7,500억원 이상 투입되고 있지만, 지도·점검을 실시하면, 점검시설 5곳 중 1곳이 위반시설로 적발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시민의 세금이 보다 투명하게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한편, 이와 동시에 보다 질 높은 보육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그 개선 노력이 더욱 요구됨.

- 더욱이, ‘15년 초 인천 연수구 아동학대 사건 및 어린이집 리베이트 사건 등 어린이집 관련 각종 사건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어린이집 수요자인 아동 및 부모의 입장에서는 현재의 지도 점검·체계는 과다하다고 느끼지 아니한 상황임.
- 이런점에서 보면, 실제로 지도·점검뿐 아니라 보건복지부 주관인 평가인증은 매3년마다, 부모모니터링은 매년 실시하고 있지만, 모든 시설이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 서울시 주관하에 이루어지는 지도·점검이외에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는 도래하는 만3년의 시점에 대상시설 약400여개 정도 진행되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지만 시기를 고려하여 자치구 협의가 가능하다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 볼 때,
 - 어린이집 지도·점검은 보육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고 투명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며, 그

지나침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 그럼에도 한편으론, 지도·감독을 받는 어린이집 입장에서는 지도·감독이 너무 과다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바,
 - 현행의 지도·점검 체계하에서 만일 유사·중복되는 점검이 있거나, 또는 유사시기에 집중적인 지도·점검을 받게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이의 개선을 위한 현행의 지도·감독 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향후 서울시에서는 효율적 지도·점검체계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계획을 마련하여, 학부모와 보육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면서도, 보육 품질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선순환적 지도·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덧붙여, 지도·점검과 관련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서는 어린이집 지도·점검 지원을 위한 현행 조직을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개편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후술하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내용 참조).

■ 어린이집 회계시스템 의무가입으로의 전환 필요

- 한편,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가운데 서울시가 운영하는 회계관리시스템에 가입한 어린이집은 전체의 74%에 이르고 있고, 여전히 미사용 시설은 26%에 해당함(15.9.30 기준).

〈표 29.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현황〉

전체 시설	사용 시설	미사용 시설 ¹³⁾
6,618개소(100%)	4,871개소(74%)	1,747개소(26%)

* 자료출처: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 현재 복지부 차원의 별도의 회계관리시스템이 부재한 가운데,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회계관리시스템은 시 자체에서 개발한 것으로,
 - 어린이집의 세입 및 예산, 집행·결산 등 일련의 재무회계 처리 기능과 물품·관리, 급여대장, 교사 및 아동출석부 출력 등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지원기능 등을 탑재하여 어린이집의 사무 부담을 경감하고, 또한 급간식 기준, 기타 운영비 기준 초과시 경고 기능 등 기능을 갖추고 있는 상황임.
 - 무상보육 시대를 맞아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시 예산 규모가 점차로 늘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의 회계관리시스템은

13)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므로,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매체에 의한 재무회계처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므로, 어떤 시스템이든 정보통신매체를 활용한 회계시스템을 갖추어야 하고, 서울시회계관리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곳(전체 어린이집의 26%)은 각자의 회계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그 의미가 큰 것으로 보여짐.

- 따라서, 현재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을 미사용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대하여는 현행의 가입 권고 수준의 행정조치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모든 어린이집에 대하여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조건을 제시하는 등 보다 강력한 수단을 통해 가입을 의무화하고,
 - 이를 통해 시설의 재무·회계의 명확성, 공정성,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명실공히 사회복지 공공시설로서의 합리적 운영에 기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봄.

자. 세부 사업별 검토의견

1) '위기 청소년(女) 자립꿈터 설치 운영' 사업 (신규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자립지원 사업의 새로운 모델 창출에 기여
- 사업 운영권에 대한 부적절한 사전 협약 문제
- 부적절한 기부채납 조건의 문제

■ 사업 및 예산 개요

- 동 사업은 위기 청소년 자립꿈터 건립을 통해 가출, 성매매 등 사각지대에 놓인 청소년(女)들에게 일시생활지원에서 학업 및 일자리 지원까지 한 곳에서 실질적 자립을 도모할 수 있는 복합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 2016년 신규사업으로 17억원을 편성함.
 - 구체적 내역은 청소년 자립꿈터 건립을 위한 '부지 매입비'임.

〈표 30. 위기 청소년(女) 자립꿈터 설치 운영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액(A)	2016년 예산(안)(B)	증감(B-A)	증감율 (B-A)*100/A
계	(x-)	(x-)	(x-) 1,700,000	(x-) 1,700,000	(x-)
시 설 비	(x-)	(x-)	(x-) 1,700,000	(x-) 1,700,000	(x-)

■ 사업의 필요성과 그 의미

- 2014년 가출청소년은 총 13,434명 가량으로, 이들은 의식주 해결이 어려워 생계형 성매매 등에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나, 현재 이러한 위기 청소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체계가 미흡한 상황임.
- 이에 동 사업의 추진은 청소년을 위한 전문적이고 통합적인 자립지원 사업의 새로운 모델 창출하고, 이를 통해 위기청소년에게 건강한 ‘일’ 경험과 자립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삶에 대한 주체성 함양과 성매매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긍정적 의미가 크다고 봄.

■ 사업 추진경위 및 경과 등

- 서울특별시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게 된 계기는,
 - 지난 '15년 5월에 (주)벽산과 ‘새날이 오면¹⁴⁾(이하 “새날”이라 함)’이라는 단체에서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을 위한 건립비용(8억원) 지원 및 기부체납 제안을 해오에 따라, 민·관·기업 3자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사업이 추

14) ‘새날’은 2013년 1월에 설립된 단체로서, 2015년 10월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됨.

- 성매매 피해 청소년 지원시설인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에서 분리된 단체임. 새날을 여는 청소년 쉼터는 보호시설 및 늘푸른 자립학교, 서울위기청소년교육센터를 운영하면서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새날에오면을 설립하여 위기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한 접근성 높은 자립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음
- ‘새날’에 서울시 지원 사항은, 가출 등 위기 청소년을 위한 자립지원사업 ‘인턴쉽 아카데미’운영 지원을 위해 2015년 기준 9,153만원(시비 100%)가 지원 된 바 있음. (자료제공: 서울시)

진되게 되었고,

- 여기에 필요한 시설 부지는 서울시가 마련하기로 하여, 금번 2016년 예산에 부지매입비를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게 된 것이며,
- 이후 지난 '15년 11월 3일에 상기의 내용에 대하여 서울시와 (주)벽산과 새날 간의 3자간 자립꿈터 건립을 위한 공동업무협약식을 갖은바 있음.

〈위기 청소년 자립꿈터 건립 추진 경위 및 경과 등〉

추진경위

- (주)벽산 건립비용 지원(8억 원 상당) 및 기부채납
※ (주)벽산은 새날에 오면('새날')이 기부채납 공간을 이용하여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요청

추진경과

- 건립비용 지원 및 기부채납 제의 : '15. 5월
- 2016년 신규사업 선정 (기획조정실 최종심사 통과) : '15. 7. 6
- 청소년밀집지역 매입대상 부지 조사 : '15. 8월
- 기부채납 검토 및 결과보고 : '15. 9. 18
- 2015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원안가결 : '15. 10. 13
- 자립꿈터 건립을 위한 공동협약식 실시 : '15. 11. 3

향후 계획¹⁵⁾

- 부지매입 : '16. 1월
- 위기 청소년 자립꿈터 건립: '16. 3월~6월
- 자립꿈터 개소식 및 운영 : '16. 7월(예정)

- 상기의 3자간 업무협약 내용¹⁶⁾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 '향후 계획'은 '위기 청소년 자립꿈터 건립 추진계획(안)' 와 2016예산 설명서 내용임

16) '서울시-(주)벽산-새날에오면' 위기청소년 자립꿈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서 제2조 내용

- (주)벽산은 새날에 위기 청소년의 자립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자립꿈터 건립에 필요한 비용(8억원)을 후원하며,
- ‘새날’은 (주)벽산으로부터 후원받은 비용으로 자립꿈터를 건립하고, 준공과 동시에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 서울시는 여기에 필요한 부지의 제공과 행정업무 등을 지원하도록 함.

■ 의회의 예산심의 및 민간위탁 절차 이행 전 사업 운영권에 대한 부적절한 사전 협약 문제

- 그런데, 상기의 3자간 업무협약서 내용 가운데 서울시의 협력 사항 중 ‘행정업무 등 지원’이라고만 표기되어 있으나,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서울시 방침서(「위기 청소년 자립꿈터 건립 및 운영계획」, 2015. 9)에 따르면, 새날은 서울시에 기부채납한 공간을 이용하여(무상사용) 위기 청소년 지원사업을 직접 운영(건물 관리·운영 포함)하도록 하였는데,
- 여기서, 기부채납에 따른 기부자의 무상사용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¹⁷⁾에 의거하고,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2015. 10. 13일자)를 거쳐 그 승인이

1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2.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되어 절차 및 내용상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그러나, 새로 건립하게 될 청소년 자립꿈터 운영권을 새날에 허락한 것이나 다름없는 사전 업무 협약은, 아무리 사업의 취지가 좋고, 건물 건립에 드는 비용을 기부채납 방식으로 추진한다 하더라도, 이에 부수되는 예산의 확보와 이의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 동의 절차가 남아있는 상황¹⁸⁾에서 의회의 예산심의와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사전 동의를 받기도 전에 우선적으로 사전협약을 진행하고, 사후적 의회 승인을 요구하는 것은 그 절차상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이어질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의 절차도 수의계약 방식이 아닌 공개모집을 거치게 된다면, 이는 위탁체를 이미 결정한 것이나 다름없어 사실상 공개모집 자체가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아, 적격자 심의 자체를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할 것임.

■ 부적절한 기부채납 조건의 문제

- 더욱이,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 14조제2항¹⁹⁾에 따르면, ‘기부채납 원칙’에 있어 “기부채납을 할

18) 물론, 동 사업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면, 이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으나 그동안의 유사사업의 운영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여왔던바, 향후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게 된다면 문제가 되는 것임.

19) 제14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때에는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당초 (주)벽산이 서울시에 기부채납의 제안조건으로 새날이 동 사업의 운영을 맡을 수 있도록 요청한 것에 대하여 서울시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결국 동 사업의 운영권 자체를 지속적으로 새날에 제공할겠다는 것과 다름 없어, 기부채납의 원칙과도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봄.

② 기부채납을 할 때에는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기부한 사람에게 부당한 특혜를 주는 조건을 붙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아동친화도시 추진' 사업 (신규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적 세부사업 필요
-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설치·운영 사무에 대한 별도의 민간위탁 사무 등록 조치 필요

■ 사업 및 예산 개요

- 동 사업은 부모가 돌보기 어려운 아동에 대한 현재의 사후적, 시설보호 중심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사전예방적, 지역사회 보호 중심으로 전환하여, 아동을 권리의 객체에서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친화도시 패러다임 구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으로,
 - 2016년 신규사업으로 5억 5,100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31. 아동친화도시 추진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액 (A)	201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	(x-)	(x-) 551,000	(x-) 551,000	(x-) 100
사무관리비	(x-)	(x-)	(x-) 67,000	(x-) 67,000	(x-) 100
연구용역비	(x-)	(x-)	(x-) 70,000	(x-) 70,000	(x-) 100
민간위탁금	(x-)	(x-)	(x-) 164,000	(x-) 164,000	(x-) 10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x-)	(x-) 250,000	(x-) 250,000	(x-) 100

■ 사업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차별적 세부사업 필요

- 서울시 사업설명 자료에 따르면, 사업의 추진 경위는 복지 및 건강 교육 분야 등에서 가족과 아동의 개별적 욕구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중심의 선제적, 맞춤형 복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시장의 요청사항('15. 7. 30)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설명됨.
- 제시된 사업취지의 긍정적 의미에 공감하는 바가 크지만, 이의 추진을 위한 세부사업은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 사업으로의 매칭이 다소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임.
- 구체적으로, 2016년 예산에 편성된 주요 세부사업 내역을 살펴보면, 주로 아동 학대 예방 교육, 홍보비(총 5,500만원) 또는 아동친화도시 추진 기반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 등(연구용역 및 자치구 포럼, 정책박람회 추진비로 3억 9,500만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 특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아동학대예방 교육 관련 예산(5,500만원)'은 기존 유사 사업들과의 차별성이 크지 않고, 더욱이 이러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예방 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과연 지역사회 중심의 선제적, 맞춤형 아동친화도시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그리고 정책 타겟층으로서 관련성이

깊은지에 대하여 신중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자치구 포럼(2억 5,000만원)’의 경우에도, 현재 서울시에
서 제출한 계획서상에는 공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만
제시되고 그 구체적 내용이 부재한 상황임.

〈표 32. 아동친화도시 추진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사무관리비	○ 아동학대 상설교육장 운영 - 강사 인건비 및 교육장 운영비 등 30,000천원 = 30,000천원
	○ 방과후 돌봄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 회의 및 간담회 진행비 등 37,000천원 = 37,000천원
연구용역비	○ 아동친화도시 추진 로드맵 연구용역 70,000천원 = 70,000천원
민간위탁금	○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설치 및 운영 - 주택보증금, 주택임대료 지원 64,000천원 = 64,000천원
	○ 아동친화도시 인식개선 및 정책박람회 등 75,000천원 = 75,000천원
	○ 아동학대 인식개선 및 예방, 홍보 등 25,000천원 = 25,000천원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 아동친화도시 추진 자치구 포럼 등 250,000천원 = 250,000천원

- 이런 점에서, 오히려 동 사업에서는 아동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로드맵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이 시행할 계획인바, 이
연구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구체적 아이디어들을 차기년도
사업으로 구성해 가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해 보임.

■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 설치·운영 사무에 대한 별도의 민간위탁 사무 등록 조치 필요

- 동 사업의 세부사업의 하나로 ‘지역밀착형 소규모시설’을 설치 운영하기 위해 6,4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표 32 참조), 이는 현재 대규모로 운영되는 아동양육시설을 지역사회내 소규모 시설로의 전환하기 위한 시범사업의 하나로 향후 지역사회내 설치될 지역 밀착형 소규모 아동복지시설들에 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부여하기 위한 것임.
 - 이의 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의 시립 꿈나무마을(아동양육 시설) 및 시립아동상담치료센터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으로 기존 시설에 민간위탁금의 형태로 예산을 집행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됨.
- 그러나, 동 세부사업은 기존시설과 공간을 달리하는 새로운 시설의 설치·운영인 동시에 기존의 시설과의 그 기능과 역할도 차별적인점이 있다는 점에서 신규 민간위탁 사무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 이 경우, 신규 위탁사무에 대한 관련 절차의 이행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그러나 금번 예산편성에서는 기존 시설에 해당 예산을 집행하는 방식으로 처리하고 있는바, 이의 문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3)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계속사업)

주요 쟁점 및 고려 사항

-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에 따라 보육사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추가 예산 필요
- 연례적 집행잔액 과다 문제 개선 선행 필요
- 아동복지시설 운영평가 강화를 통한 보조금 투명운영 필요

■ 사업 및 예산개요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보호필요아동에게 좋은 성장환경을 조성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방이양 사무로서 전액 시비 지원 사업임.
- 2016년 예산안은 2015년 대비 27억 2,232만원이 증액(4% 증가)된 601억 7,578만원이 편성됨.

〈표 33.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 예산액 (A)	201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 51,648,611	(x-) 57,453,461	(x-) 60,175,781	(x-) 2,722,320	(x-) 4
사무관리비	(x-) 18,400	(x-) 18,400	(x-) 41,675	(x-) 23,275	(x-) 126
시책추진업무 추진비	(x-) 4,800	(x-) 4,800	(x-) 4,800	(x-)	(x-)
민간위탁금	(x-) 14,114,339	(x-) 14,962,862	(x-) 14,665,220	(x-) △297,642	(x-) △1
사회복지시설법 정운영비보조	(x-) 37,511,072	(x-) 42,467,399	(x-) 45,464,086	(x-) 2,996,687	(x-) 7

- 주요 증액 사유는, 3년 주기 보건복지부 시설평가 관련 수당 반영분(‘사무관 리비’ 증액분 2,3027만원)과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인상율(4.67%) 반영 및 법정충원 필요 인력 일부(29억 9,668만원 증액, 42명분 17억 7,600만원 포함)반영분에 따른 것임.

■ 지원대상 시설 현황 및 내용

-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은 총 40개소(양육시설 32, 보호치료3, 자립지원3, 보호치료 3, 종합2)와 지역아동복지센터 18개소, 기타 3개소(아동자립지원사업단, 자광아동가정상담원, 정보화교육센터)로, 이들 시설/기관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 사업비,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음.

〈표 34. 지원대상 시설현황〉

(단위 : 개소)

계	보호필요아동 생활시설					보호필요 및 일반 아동 이용시설				아동자립 지원사업단
	소계	양육	자립 지원	보호 치료	종합	소계	지역아동 복지센터	정보화 교육센터	자광아동 가정상담원	
62	40	32	3	3	2	21	18	2	1	1

■ 종사자 배치기준 강화에 따라 보육사 법적 기준 준수를 위한 추가 예산 필요

- 시설종사자 인건비 지원과 관련하여, 지난 2012년 8월 「아동복지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시설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을 강화하였고, 이에 따른 3년간의 유예기간이 지난 2015년 8월 4일에 완료됨에 따라 강화된 기준으로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함.
- 이에 따라, 개정·시행된 법적 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2016년 기준으로 법정배치 필요인력은 총 1,664명이지만, 현재 서울시에서는 예산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개정된 「아동복지법」 기준에 따른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1,011명에 해당하는 인건비만을 편성(전년대비 42명분 17억 7,600만원이 확보된 상황)하고 있는바, 법적 총원 인력 653명 분에 대한 인건비의 추가 편성이 필요한 상황임.
- 따라서, 법정기준에 맞는 종사자 배치기준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271억 7,885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하는 상황이며, 아동복지시설내 아동 보호를 종사자의 적절한 배치인력을 통하여 요보호 아동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하려는 궁극적 목표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보여짐.

〈표 35. 추가확보 필요 예산액〉

(단위 : 명, 천원)

구 분	이동수	법정 종사자 수 (A)	현재 종사자 수 (B)	2016년 추가배치 (C)	부족인원 및 필요예산	
					부족인원 (A-B-C)	추가 필요 예산
계	662	1,664	969	42	653	27,178,856
보육사 외 14직종		506	347	-	159	6,282,056
보육사(0~2세)	482	482	194	42	426	10,406,400
보육사(3~6세)	180	68	28	-	40	1,692,000
보육사(7세 이상)	2,137	608	400	-	208	8,798,400

※ 보육사 10호봉 기준 42,300천원(4대 보험 및 퇴직금 포함)

■ 연례적 집행잔액 과다 문제 개선 선행 필요

- 동 사업의 증액 논의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최근 3년간의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
- 동 예산은 최근 3년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볼 때, 연례적으로 집행 잔액이 크게 발생해 왔음.
- 2013년 기준 집행잔액은 10억 3천만원(예산현액 482억 원 대비 집행잔액을 2.1%)이고,
- 2014년 기준 집행잔액은 8억 7천만원(예산현액 516억 원 대비 집행잔액을 1.7%)으로,
- 총예산규모에 따른 집행 잔액의 상대적 비율은 다소 낮다고 할 수 있겠으나, 집행잔액의 절대적 규모만을 놓고 볼 때, 한해에 10억에 이르는 예산이 미집행 된다는 점은 그 규모가 적지 않다 할 것임.

- 덧붙여, 이 예산이 최종 집행되는 시설수가 총 40여 곳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연례적으로 집행 잔액이 과다한 부분에 대하여는 명확한 설명과 해소 방안 마련이 선행되고, 상기의 필요 예산에 대한 치밀한 예산추계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표 36. 최근 3년간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당초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12	(x-) 44,034,611	(x-) 0	(x-) -309,484	(x-) 43,725,127	(x-) 43,099,822	(x-) 0	(x-) 625,305
2013	(x-) 46,388,708	(x-) 0	(x-) 1,860,871	(x-) 48,249,579	(x-) 47,215,862	(x-) 0	(x-) 1,033,717
2014	(x-) 47,718,292	(x-) 0	(x-) 0	(x-) 51,648,611	(x-) 50,778,335	(x-) 0	(x-) 870,276

■ 아동복지시설 운영평가 강화를 통한 보조금 투명운영 필요

-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대한 최근의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지난 2013년 9월에 실시한 서울시 감사관 정책감사 결과에 따르면²⁰⁾, 감사대상기관 4곳에 대한 지적사항은 총 37건으로, 주로 보조금(생계비)을 시설장 개인용으로 부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보조금 및 후원금등에 대하여 용도대로 집행하지 아니하는 등 시설 회계 관련 문제들이 다수 발견됨.

20) <정책감사 개요>

감사대상기관: 강남보육원, 영락보리원, 삼동소년촌, 경생원, 감사범위: 2011. 1~ 2013. 9월, 감사기간 : 2013. 9. 10~10, 중점감사사항: 보조금의 용도대로 집행여부, 자체점검 등 지도·감독 이행 여부, 아동의 인권적, 물질적 보장여부, 법인전입금, 후원금, 자립지원계좌 관리실태, 기능보강 사업 계약, 시공, 화재, 재난 등 시설 관리 실태

〈표37. 2013년 실시 아동 양육시설 정책감사 결과〉

구 분	지적사항
00 보육원	1. 시설장 등이 보조금 (생계비)을 개인용으로 부적정 사용
	2. 법인 임원의 시설보조금(생계비, 운영비) 용도 외 사용 부적정
	3. 시설장의 직원식대 및 적립포인트 개인용으로 부적정 사용
	4. 시설장의 고용·산업 재해보상 보험료 납부 부적정
	5.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적립액 미반납 부적정
	6. 시설 강사에 대한 성범죄 경력조회 미실시 부적정
	7.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입소아동 불이익처분 부적정
	8. 후원금품을 시설장 개인 용도로 부적정 사용
	9. 비지정 후원금을 시설장 업무추진비로 부적정 사용
	10. 시설장 가족수당 부당 수령
	11. 강남보육원 시설 안전(소방)관리 소홀
	12. 아동복지시설 내 가설건축물 무단 사용
00 보린원	1. 보조금(입소아동 생계비)으로 시설 종사자의 식재료구입 부적정
	2. 1년 미만 근무자 퇴직금 적립액 미반납 부적정
	3. 시설 학습지 교사 등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부적정
	4. 특정종교인만 서류전형에 합격시키는 등 채용 불공정
	5. 시설장 등 종사자(총 4명) 가족수당 중복 부당수령
	6. 기능보강사업 안전관리비 정산 부적정
	7. 아동복지시설 안전(소방)관리 소홀
00 소년촌	1. 가정학습지 교사에 대한 성범죄경력조회 미실시 부적정
	2.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약 부적정
	3. 후원금의 수입·지출 관리 부적정
	4. 공개전형 미실시 및 과도한 자격기준 제한 등 불공정 채용
	5. 중간정산 퇴직급여 과소 지급
	6. 삼동소년촌 공동목욕실을 참고로 부당사용
	7. 시설 사업비 현금인출 회계처리 부적정
	8. 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신고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소홀
	9. 시설종사자가 법인 회계업무 등 겸직 부적정
	10.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특정종교 교육 부적정
	11. 아동복지시설 안전(소방)관리 소홀
	12. 아동복지시설 내 가설 건축물 무단 사용
000원	1. 식자재 납품업체 선정계약 부적정
	2. 경생원 종사자 퇴직급여 부당지급
	3. 사회복지법인 경생원 증축공사 계약업체 선정 부적정
	4. 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미신고 및 정관변경 인가 신청 소홀
	5. 법인전입금 집행 감독 소홀
	6. 아동복지시설 안전(소방)관리 소홀

- 앞서 살펴보았듯이, 아동양육시설운영을 위해 한해동안 지

원되는 시비지원금은 약 601억원에 이르는데, 동 예산을 투명하고 책임있게 집행하고 관리하지 못한다면, 요보호아동에게 제공되는 필요한 서비스가 그만큼 허술할 수밖에 없고, 또 그런 만큼 시민의 혈세도 헛되이 쓰이는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임.

- 이런 점에서, 서울시에서는 아동양육시설의 운영 평가 등을 강화하여 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강력하고 책임 있는 행정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4) '아동급식 지원' 사업 (계속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아동급식단가 현실화(4,000원 -> 5,000원), 7월부터 적용
- 아동급식단가 현실화에 따른 예산증액분(6개월분), 자치구 부담완화를 위한 한시적 시비 부담 논의 필요

■ 사업 및 예산개요

○ 동 사업은 부모의 실직, 가출 등 다양한 가정 사정으로 급식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들에게 급식을 지원하는 것으로, 동 사업은 2005년에 지방이양되면서 순수 시비 100% 운영됨.

- 2016년 예산안은 2015년 대비 21억 3,757만원이 증액(12% 증가)된 192억 3,757만원으로 편성됨.

- 주요 증액사유는 아동급식 지원단가를 2016년 7월부터 기존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상하면서, 이에 따른 예산(21억 3,757만원)이 증액 편성된 것임.

〈표 38. 아동급식 지원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액 (A)	201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 18,917,300	(x-) 17,100,000	(x-) 19,237,575	(x-) 2,137,575	(x-) 12
사무관리비	-	10,000	-	△10,000	△100%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x-) 18,917,300	(x-) 17,090,000	(x-) 19,237,575	(x-) 2,147,575	(x-) 12

■ 결식아동 급식단가 현실화를 통하여 영양불균형 해소 필요

- 동 사업은 저소득 가정의 결식우려 아동들을 발굴하여 이들에 대한 결식아동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나, 그동안 이들 아동에게 제공되는 급식단가(4,000원)가 낮아 결식아동의 영양불균형에 대한 우려문제가 제기되어왔고, 이와 함께 급식카드 결제방식이 일반 신용카드와 달라 이용아동의 낙인감 발생문제가 제기 되어 왔음.
-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이의 문제 개선을 위한 대책(결식아동 급식지원 개선대책, 2015. 3월)을 세우고, 구체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도출 연구(2015, 여성가족재단, ‘결식우려아동 급식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위한 연구’)를 시행한 바 있음.
- 연구결과에서는, 급식지원 모델을 “집밥” 중심의 급식 패러다임을 전환 할 수 있도록, 그 정책비전을 제시하고, 아동 급식에 대한 적정단가 산정과 현실화 방안을 제시함.

〈그림 1. 결식우려아동 급식개선을 위한 비전체계도〉



-출처: 여성재단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이에 금번 제출된 2016년 예산안에는 아동급식 단가를 현행 1식 기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상향조정하여 반영하였고, 이의 시행은 7월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한바, 서울시의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결식아동 급식지원단가가 낮아 아이들이 편의점을 중심으로 급식을 제공받고 있어 영양불균형이 심각해 왔던바, 이러한 문제가 일정정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표 39. 연도별 아동급식 단가 인상현황〉

1998년	2004. 8월	2005. 3월	2009년	2011년
2,000원	2,500원	3,000원	3,500원	4,000

〈표 40. 2015년, 2016년 예산안 산출내역 대비표〉

2015년 예산	2016년 예산(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급식지원 : 17,100,000천원 - 연중 조·석식 16,104명×365일×4,000원×50% - 방학 중 중식 29,690명×90일×4,000원×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급식지원 : 19,237,575천원 - 연중 조·석식 16,104명×366일× [4,000원×197일/366일 +5,000원×169일/366일] ×50% - 방학 중 중식 29,690명×90일× [4,000원×47일/90일 +5,000원×43일/90일] ×50%

■ 자치구 매칭 부담분 최소화를 위한 2016년 아동급식단가 증액분(6개월분) 시비 부담 논의 필요

- 동 사업은 시비와 구비 50:50의 매칭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서울시에서 2016년 예산안 기준 192억원을 확보하면 이에 상응하는 192억원은 각 자치구에서 매칭하여 지원하게 되는 것임.
- 이에 각 자치구에서는 2016년의 경우 기존의 아동급식사업비 규모에 추가적으로 아동급식단가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적 예산 확보가 필요한 상황임.
- 이와 관련하여, 각 자치구별 최근의 재정상황과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분야 예산증액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해볼 때, 각 자치구 단위에서는 아동의 급식단가가 현실화하려는 증액 취지에 적극적으로 동감한다하더라도, 현실적인 재정 상황으로 인한 어려움이 적지 않음을 짐작해 볼 수 있음.

- 특히, 이처럼 광역 단위에서의 정책변화에 따른 예산증액 조치는 보다 열악한 재정구조를 갖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상황에는 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렇다고 이에 대한 매칭 거부 등의 조치도 쉽지 않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 2016년의 경우 단가 조정의 첫해인 만큼 6개월분 증액분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시비로 전액 지원하고 자치구에는 내년 부터 점차적으로 확대해가는 방안도 고려해 볼 만 한 것으로 생각됨.
 - 이러한 사례는 과거 급식단가 인상이 이루어졌던 2011년 당시에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사례가 있었던바, 이의 검토가 필요해보임

5)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 (계속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국공립확충, 자치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여전
- 국공립어린이집 지도·감독 결과, 법규위반 및 행정처분비율 매년 증가 추세
- 서울형보다 법규위반 및 행정처분 비율 높아...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내 재평가 대체 기능 보완 필요
-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중장기 계획상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의 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체계 필요

■ 사업 및 예산개요

- 동 사업은 보육수요 해소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한 것임.
- 2016년 예산안은 2015년 대비 707억원이 증액(76% 증가)된 1,654억 1,000만원이며,
- 주요 증액 사유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계획(시장방침)'에 따라 '16년 300개소 확충을 추진하기 위한 것임.

〈표 4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액 (A)	201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12,543,404) 81,473,404	(x13,940,000) 94,650,000	(x13,940,000) 165,410,000	(x-) 70,760,000	(x-) 74
사무관리비	(x-) 30,000	(x-) 100,000	(x-) 360,000	(x-) 260,000	(x-) 260
행사운영비	(x-)	(x-)	(x-) 50,000	(x-) 50,000	(x-)
연구용역비	(x-)	(x-) 50,000	(x-) 50,000	(x-)	(x-)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x-)	(x-)	(x-) 27,300,000	(x-) 27,300,000	(x-)
자치단체자 본보조	(x12,543,404) 81,443,404	(x13,940,000) 94,500,000	(x13,940,000) 137,700,000	(x-) 43,200,000	(x-) 45

■ 국공립확충사업 현황 및 실적

- 서울시는 보육의 공공성 확대 및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을 ‘12년부터 주요시책 사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으며,
- ‘12년부터 ‘15년까지 매년 각각 889억원, 775억원, 798억원, 946억원²¹⁾의 예산으로, 지난 4년간 총 3,408억 원을 집행하고,
- 동 기간동안(‘12년~ ‘15년 9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총 452개소를 확충하였음.

〈표 42.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 및 확충 실적〉 (단위: 억원, 개)

연도	예산 집행액	확충 개소수 합계	민관 연대	공공 기관	공동 주택	건물매입		신축	민간 매입
						신축	리모델링		
2012	889 억원	107	35	19	24	12	9	4	4
2013	775 억원	102	36	10	27	3	17	4	5
2014	798 억원	87	18	4	39	2	17	4	3
2015	946 억원	156	5	6	10	10	4	14	121
합계	3,408억원	452	94	39	100	27	47	26	133

* 자료출처: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정리

- 이상과 같이,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자체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현재 전국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5%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시는 국공립 설립 비율을

21)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집행액 기준이며, 2015년은 예산액 기준임

13.4%까지 향상시켰고, '12년말 기준 총 690개소였던 국공립어린이집은 '15년 9월 현재 888개소로 확대시킨바, 이는 보육공공성 및 보육품질 개선을 유도하는데 기여하고, 중앙정부 정책을 선도하는 역할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됨.

〈표 43.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 (단위: 개소수, %)

구 분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단체	민 간	가 정	부모협동	직장
시설수	6,618	888	35	145	2,192	3,138	27	193
비율	100.00%	13.42%	0.53%	2.19%	33.12%	47.42%	0.41%	2.92%

* 2015. 9월말 서울시 보육시설 현황(보육통합정보시스템 자료) 기준

* 자료출처: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 서울시는 향후 2018년까지 1,000개소(이는 전체 어린이집의 30%가 국공립이 되는 비율을 적용한 숫자임)를 추가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2016년도에는 총 300개소를 확충을 위해 1,654억 1,000만원의 편성한 것임.

〈표 44.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연차별 계획〉

(단위: 백만원)

연 도 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시설확충	150개소	300개소	300개소	250개소
예산계획	945억원	1,890억원	1,890억원	1,575억원

* 자료출처: 201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 상기 자료는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 계획서상 자료로, 당시 계획서 2016년 예산계획과 금번 실제 편성된 예산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관련, 수반되어야 할 전제조건

- 이상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한 정책방향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정에서 고려되고, 확충의 결과로 나타나는 긍정적 기대효과들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는 다양한 노력들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가령, 자치구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격차의 문제라든지, 대규모 확충 과정에서 부적절하게 열악한 민간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례라든지, 확충된 국공립어린이집의 실제 공공성 실현을 위한 제대로 된 지도·감독 필요 등과 관련한 사안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임.

■ 국공립확충, 자치구간 빈익빈 부익부 현상 개선 필요

- '12년 이후 '15년 9월말 현재까지 확충심의 완료된 452개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자치구별 확충현황을 살펴보면,
- 1개 자치구 평균 18.1개소가 확충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자치구간 확충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 45. 자치구별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및 확충 현황〉(단위: 개소수)

구분	계	종로	중구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마포	양천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계	452	7	3	6	36	7	18	9	33	12	16	15	21	16	17	20	23	25	22	24	24	24	25	12	9	28
'12.	107	2	2	3	16	2	3	2	3	3	2	2	7	7	3	5	6	6	6	5	7	4	2	2	2	5
'13.	102	3	0	1	11	1	4	3	12	1	4	4	1	1	4	5	2	7	5	7	4	0	7	2	3	10
'14.	87	2	0	0	4	0	4	1	9	1	1	0	2	0	4	2	10	8	2	3	1	11	8	8	1	5
'15.9.	156	-	1	2	5	4	7	3	9	7	9	9	11	8	6	8	5	4	9	9	12	9	8	-	3	8

*자료출처: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 구체적으로, ‘성동구’와 ‘성북구’의 경우 동 기간 동안 36개소, 33개소를 각각 확충하여 전체 자치구 가운데 가장 많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한 반면에, ‘중구’와 ‘용산구’의 경우 3개소, 6개소를 각각 확충하여 가장 적은 수의 확충 기록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물론, ‘중구’와 같이 일반 거주 인구가 적어 국공립확충 개소수가 적을 수밖에 없는 일부 자치구를 감안해 보더라도, 광진구(7개소), 중랑구(9개소), 강북구(12개소), 노원구(15개소), 도봉구(16개소)의 경우에도, 평균에 크게 밀도는 확충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이상과 같이 자치구간 편차가 나타나는 것은 해당 구청의 정책의지와 재정역량 등이 총체적으로 결과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는 대체로 재정력이 낮은 자치구 일수록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낮은 상황이고, 그래서 더 많은 국공립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자치구 입장에서는 국

공립 확충 이후 지속적으로 국공립운영에 필요한 매칭 예산을 확보해야하는 상황이므로, 이에 따른 재정적 부담 등으로 인하여 적극적으로 확충하지 못하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다는 측면이 있다 할 것임.

- 따라서, 향후 서울시는 국공립어린이집 1,000개소 확충에 있어 이러한 자치구간 재정력 격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 및 보조금 지원의 차등적용 등에 대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방안을 모색·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전문성·객관성 강화 필요

-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²²⁾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정책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하고,

22)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사업·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인증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다만,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도 또는 시·군·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1.6.7.>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6.7.>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여기에 참여하는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함.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하여, 상기의 각 자치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서울시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심의회가 이루어지기 전 단계에서 관할 자치구에 필요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대상을 심의할 뿐만 아니라,
 - 확충결정 이후 관할 자치구 소관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위탁체 선정 심의하게 되므로, 각 자치구의 보육정책위원회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겸비한 위원의 구성과 운영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 및 유지·관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된다 할 것임.
 - 그런데, 각 자치구별 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구성 내역을 살펴보면, 일부 자치구에서는 보육 전문가라고 보기 어려운 위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고,
 - 이를 위해 서울시 차원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 및 강화·유지를 위해서라도 꾸준한 권고 조치 등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공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 국공립어린이집 지도감독 결과, 법규위반 및 행정처분비율 매년 증가 추세, 서울형보다 법규위반 및 행정처분 비율 높아..

○ 서울시에서 제출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지도·점검 결과, 지도점검 대상 국공립어린이집(예. '15년 기준 762개소) 대비 법규위반(예. '15년 기준 119건) 비율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13년 13.68% ⇒ '14년 15.04% ⇒ '15년 15.62%)로 나타남.

- 이는 서울형어린이집 법규위반 건수에 비해서도 더 높은 위반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표46.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및 서울형어린이집 법규위반 유형별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연도	어린이집(개소)	지도점검수(개소)	법규위반 유형별(건)					지도점검수 대비 법규위반비율
				계	운영일반	재무회계	아동,교직원	안전위생	
서울형	2013년	2,356	1,485	292	73	122	52	45	19.66%
	2014년	2,234	1,567	227	58	111	15	43	14.49%
	2015.9.	1,472	986	56	26	14	3	13	5.68%
국공립	2013년	750	585	80	24	25	20	11	13.68%
	2014년	844	758	114	35	37	12	30	15.04%
	2015.9.	888	762	119	38	44	20	17	15.62%

* 아동학대관련 어린이집 전수조사('15.2~3월), 노후시설 안전점검('15.8~9월, 1,615개소) 별도실시

* 자료출처: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구성

○ 또한, 행정처분개소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데, 지도점검 대상 국공립어린이집 개소수 대비 행정처분 개소수는 '13년 10.7%이고, '14년에는 12.14%로 증가함(다만, '15년 9월 현재의 경우, 그 비율 9.45%로 다소 줄어들음). 이는 전체 점검대상 국공립어린이집 중 매년 평균 11%에 이르는 어린이집이 행정처분 대상이 되고 있음을 의미함.

- 더욱이, '14년과 '15년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서울형 어린이집에 비해 행정처분을 받은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47. 최근 3년간 국공립어린이집 및 서울형어린이집 행정처분유형별 건수 및 비율〉 (단위: 건, %)

구분	연도	어린이집 (개소)	지도점검 수 (개소)	행정처 분(개소)	행정처분 유형별 (건)					지도점검수 대비 행정처분 비율
					계	시정 명령	운영 정지	자격 정지	보조금 환수 (건/천원)	
서울형	2013년	2,356	1,485	253	178	103	2	33	40/125,189	17.04%
	2014년	2,234	1,567	145	137	131	0	0	6/8,655	9.25%
	2015.9.	1,472	986	38	46	42	1	1	2/1,495	3.85%
국공립	2013년	750	585	63	58	48	0	0	10/5,733	10.77%
	2014년	844	758	92	97	89	0	2	6/40,533	12.14%
	2015.9.	888	762	72	122	114	0	0	8/2,598	9.45%

* 자료출처: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재구성

- 이상과 같이, 국공립어린이집의 법규위반 및 행정처분 비율의 증가추세 문제와 이러한 비율이 서울형어린이집보다도 높다는 점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서울시가 국공립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것에만 주력할 것이 아니라, 깨끗하고 투명한 운영을 통한 보육품질 개선에도 보다 주력해야 함을 시사하는 중요한 결과라 보여지며, 이의 개선을 위한 대대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내 재평가 대체 기능 보완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 강화와 관련하여,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은 위탁체 선정, 재위탁 심의 등 자치구에서 운영 사항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에서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보다 다양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등의 선도적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임.
- 이런 점에서 앞서 지적한 문제 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현재 위탁기간을 5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서울형 재평가도 3년에 한번씩 이루어지는 것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5년 이내라도 별도의 재평가 방안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 어린이집 지도·점검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조직개편 필요

- 또한, 이의 업무 수행을 위한 서울시 보육담당관내 조직개편이 요구됨.
- 어린이집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서울시는 지난 2013년 당시 어린이집의 리베이트 사건등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어린이집 관리강화 대책(2011. 5. 29일자)’을 발표하고, 기존 1개팀으로 이루어지던 어린이집 지도·점검팀을 2개 팀으로 확대 개편한바 있으나, 확대된 해당 팀(지도점검 2팀)은 2014년 이후 ‘국공립확충팀’으로 그 기능을 개편되면서 해체 함.
- 그러나, 2013년 이후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된 이후 정부 차원의 보육료 및 어린이집 관련 지원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시민의 입장에서 보육 질의 향상을 위한 수요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어린이집의 투명한 운영 지도·점검을 위한 관련 조직 개편은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봄.

■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필요

- 현재 서울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된 자치 조례는 현행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에 의

거함.

- 이 조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서울시에서 국공립어린이집의 대대적인 확충을 위한 심의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이 부재한 상황인바,
- 앞서 제시한 자치구간 격차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한 각종의 조직 및 효율적 지도·점검의 방안 등 향후 국공립어린이집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도적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짐.
- 덧붙여,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한 심의 기준이 `12년 최초방침 수립 된 후 2회에 걸쳐 변경된 바 있으나, 이러한 기준은 시장방침을 통해 행정필요에 따라 자주 변경하는 경향이 있어 왔던바, 적어도 시행규칙을 통하여 집행부 내부에서라도 최소한의 절차 등을 거치는 방식으로 개선됨으로써 보다 책임 있는 행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신규사업이 아니라도 중장기 계획상 일정규모 이상의 예산사업의 투자사업 타당성 검증 체계 필요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사업의 경우, 서울시가 2012년 이후 주요 시책사업의 하나로 대규모의 예산 투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 2016년 예산안을 포함하여 최근 4년간 여기에 투자한 사업비는 총 5,062억원(※'12-15까지 3,408억원, 2016년 1,654억원)으로, 그 규모가 대단한 수준이라 할 것임.
 - 그런 점에서 보면, 이처럼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시차원에서 중장기적 투자 관련 타당성 검증 등 투자사업에 대한 적합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 그러나, 현행의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40억원 이상의 신규사업이 아닌 이상 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성 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에서 벗어나 있다²³⁾고 할 수 있어, 상기의 국공립어

23)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 33조 및 제37조,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에 대하여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구성한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음.

이에 따라 서울시의 경우, 그 심사대상이 되는 기준은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등이 심사 대상이 되며, 「서울특별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투자사업에 대한 적합여부(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시 주요시책 및 중장기계획등과의 부합성, 투자사업의 규모, 투자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등 이상 제2조의 내용임)에 대하여 심사를 받아야 함.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제3조(심사대상) ① 이 규칙에 따른 심사대상이 되는

린이집 확충 사업의 경우 그 대상이 되지 아니함.

- 그러나, 동 사업의 예산규모로 볼 때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적격여부 등의 심사를 거치도록 한 법령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같은 대규모 사업에 대한 투자적격여부 심의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5.8.25., 2006.6.22., 2009.6.11., 2011.4.28., 2013.8.16., 2015.5.28.>

1. 총사업비 3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2.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치구 사업으로서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3. 2이상의 시·도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과 2 이상 자치구와 관련되는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사업
 4. 시·자치구의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연·축제 등 행사성 사업과 홍보관 사업
 5. 사업비 전액을 자체재원으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자치구의 청사 신축사업과 문화·체육시설 신축사업
 6. 시·자치구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7. 그 밖에 시장이 투자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6.11., 2011.4.28., 2013.8.16., 2015.5.28.>
1. 신규투자사업이 아닌 사업
 2.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가. 관련 법령에 따라 추진하는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 나. 소방장비, 119구급장비 및 소방용헬기 구입
 - 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대체 취득
 - 라. 사업비 전액이 민간자본 또는 외국자본인 사업
 - 마. 사업비 전액이 국가에서 지원한 재원인 사업
 - 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부처간 협의를 거친 사업이나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사업

6)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사업 (계속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어렵고 복잡한 예산구조 개선 필요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운영 내실화 필요
- 차액보육료, 무상보육 시행 취지에 맞게 국고보조 지원 필요

■ 사업 및 예산개요

- 동 사업은 보육교직원 인건비, 운영비 및 저소득층 아동의 보육료 지원 등을 통한 영유아 건전육성 및 여성의 경제 사회적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임.
-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220억원이 감액(12% 감소) 된 1,479억 5,905만원이 편성됨.
- 주요 증감 사유는,
 - 그동안 보육교교사 인건비 가운데 시비로 운영하던 '비담임 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2015년 기준 214억원) 항목이 '보육돌봄서비스'라는 예산 사업으로 이관되면서, 214억원 이 감소하였고,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정부지원시설원장 원장 195천원, 교사 월 145천원, 민간시설교사 월 200천원)가 19억원 감소한 것임.
 - 한편, 민간어린이집 일반아동에 대한 '보육차액료'는 전년대

비 23억원이 증가한 것임.

〈표 48.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액 (A)	201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 164,856,071	(x1,367,040) 170,010,098	(x-) 147,959,051	(xΔ1,367,040) Δ22,051,047	(xΔ100) Δ12
사무관리비	(x-) 87,500	(x-) 50,100	(x-) 51,100	(x-) 1,000	(x-) 1
공공운영비	(x-)	(x-)	(x-) 23,000	(x-) 23,000	(x-)
시책추진업 무추진비	(x-) 12,000	(x-) 12,000	(x-) 14,000	(x-) 2,000	(x-) 16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x-) 164,756,571	(x1,367,040) 169,947,998	(x-) 147,870,951	(xΔ1,367,040) Δ22,077,047	(xΔ100) Δ12

■ 어렵고 복잡한 예산구조 및 예산과목 문제 개선 필요

- 상기 사업은, 예산규모가 타 예산사업에 비하여 매우 큰 사업임에도 위의 〈표 48〉에 제시하였듯이, 하위 통계목은 오로지 4개(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자치단체경상보조금)로만 구성되어 있고,
 - 통계목에 부수되는 세부사업이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지만, 예·결산서에는 통계목까지의 정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아래 〈표 49〉의 음영부분에 해당하는 ‘대체교사 인건비’ 등 총 10개의 세세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예산 및 결산 서에서도 볼 수 없는바, 이의 정보를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는 상황임.

〈표 49.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예산 명세〉

(단위: 천원)

구분	2015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증감사유
계	170,010,098	147,959,051	△22,051,047	
사무관리비	50,100	51,100	1,000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4,500	4,500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위원회 운영	6,600	6,600	-	
보육사업설명자료 인쇄	39,000	39,000	-	
보육인의날 표창패 제작	-	1,000	1,000	
공공운영비	-	23,000	23,000	문자전송시스템 도입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00	14,000	2,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69,947,998	147,870,951	△22,077,047	
보육교직원인건비	64,227,074	40,620,904	△23,606,170	
대체교사 인건비	1,062,000	886,817	△175,183	지원대상 감소(8,497→5,947명)
처우개선비	40,692,600	38,739,510	△1,953,090	지원대상 감소 (38,980→37,075명)
종교시설 인건비	220,514	220,514	-	
시간연장 근무 수당 등	703,320	701,343	△1,977	국비 지원시설 증가로 민간 지원 대상 감소
365 열아반집	122,544	72,720	△49,824	지정시설 감소(4→3개소)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1,367,040) 21,426,096	-	(×△1,367,040) △21,426,096	보조교사 국고사업 신설로 보육돌봄서비스 예산으로 사업 이 관
시설운영비 지원	15,970,500	15,804,800	△165,700	
영아반 운영비	13,044,300	13,044,300	-	
보육교사 증식비	2,727,000	2,579,100	△147,900	지원대상 감소(18,180→17,194명)
보수교육 증식비	192,000	176,000	△16,000	보수교육인원 감소(12,000→ 11,000명)
365 열아반집	7,200	5,400	△1,800	지정시설 감소(4→3개소)
보육료차액지원 (저소득)	861,750	741,330	△120,420	저소득층 지원대상 아동 감소 (3,439→2,603명)
보육료차액지원 (일반)	7,084,000	9,431,616	2,347,616	지원단가 인상 (3세 2만원→2만4천 원, 4세 1만7천원 → 2만원) 지원대상 아동 증가 3세 16,420→17,112명 4-5세 17,456→18,764명
저소득층 현장학습비 지원	966,000	966,000	-	
천기저귀 지원	690,400	690,380	△20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80,148,274	79,615,921	△532,353	공인 취소수 감안 감액 (1,657→1,579개소)

- 특히,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1,478억원)’에 부수되는 하위 세부사업들 각각은 그 예산규모도 크고, 세세하여,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이라는 통계목으로만 구분하기에는 그 내용이 너무 광범위한 측면이 있고, 각 하위사업별 내용에 있어서도 개별의 예산사업으로 구별해도 되는 사유가 충분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예컨대, 앞서 설명과 같이 보육교직원인건비 항목 중 ‘비담임교사 및 보육도우미’ 항목에서 예산 이관이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기 어렵고,
 - 최근의 일례로, 실제 이 사업은 2013회계연도에 48억 2,872억원이라는 대규모의 예산 감액전용이 발생하였고, 2014년에는 3억 27만원이 감액변경(전용 및 변경)하였으며, 2015년 10월 현재에도 11억 1,550만원의 감액변경(전용 및 변경)하였으나, 예산서 및 결산서상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느 세부사업에서 전용이 발생하였는지를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구조임.

- 따라서, 이러한 복잡하고 어려운 예산명세 문제를 반드시 해소하여 시민으로 하여금 예산정보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 보다 투명한 예산운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산과목을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됨.

- 이를테면,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이라는 세부사업의 경우, 796억원에 이르는 매우 큰 예산규모를 갖고 있고, 사업이 갖는 의미와 상징성을 고려해 볼 때도 별도의 사업으로 구분하는 것이 보다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또한, 또 다른 통계목으로 구분되는 ‘사무관리비’와 ‘시책 추진업무추진비’는 보육담당관內 자문 위원회인 보육정책 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예산과 보육담당관의 시책추진 비로서, 그 용도가 상기 사업의 목적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는바, 별도의 예산사업으로 분리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

■ 차액보육료, 무상보육 시행 취지에 맞게 국고보조 지원 필요

- ‘차액보육료’는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및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를 둔 것으로²⁴⁾, 민간 및 가정 어린이집(즉,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만 3-5세 아동의 보육료 수납한도액과 정부지원 보육료간 차이로 인해

24) 「영유아보육법」 제38조(보육료 등의 수납)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그 어린이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범위에서 그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 등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도지사는 필요시 어린이집 유형과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그 기준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6.7.>

「보건복지부 지침」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시·도지사가 어린이집의 유형 및 지역적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정부지원시설과 정부미지원시설의 영아반(만0세~만2세)은 정부지원 단가 범위 내에서 결정

발생하는 것임.

- 이에 일반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3-5세 아동은 '15년 기준으로 매월 64,000원에서 50,000원 가량의 부모부담금을 지불해야함.

〈표 50. 연도별 차액보육료 결정 금액〉

(단위: 원)

연령	2014년			2015년		
	정부미지원	정부지원	차액보육료	정부미지원	정부지원	차액보육료
만3세	274,000	220,000	54,000	283,000	220,000	63,000
만4,5세	263,000	220,000	43,000	270,000	220,000	50,000

- 상기의 '차액보육료' 예산과 관련하여, 2015년 예산심의 과정에서 우리 의회에서는 무상보육 시대에 특정 유형의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추가적인 부모부담금이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 서울시와의 증액 협의를 통해 보육료 지원시 시비부담비율 (38.5%)에 해당하는 70억 8,400만원을 확보함으로써,
 - 2015년 한해동안 만3세 아동에게는 월 2만원을, 만 4-5세 아동에게는 월 17,000원씩을 지원함.

〈표 51. 2015년 차액보육료 지원액〉

(단위: 원)

연령	지원액	차액보육료 결정기준액 ²⁵⁾	지원 수준	지원아동수 (‘15년 6월기준)
만3세	20,000원	54,000원	지원액 결정기준액의 38.5%	17,112명
만4~5세	17,000원	43,000원	지원액 결정기준액의 38.5%	18,764명

- 이에 금번 2016년 예산안에는 서울시에서 2015년도와 같이 보육료 지원시 시비부담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계(※산출근거: 3세 24천원/월, 4~5세 20천원/월 지원)하여 총 94억 3,161만원을 편성한 것임.
- 2013년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전소득 계층에게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 되었으나, 정부미지원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부모는 ‘차액보육료’라는 부모부담금을 별도로 지불하고 있어, 정부지원시설을 이용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되고, 이는 결국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기피현상과 경영악화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차액보육료’의 문제는 무상보육 정책과 배치된다고 할 것임.
- 이에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적극적인 해결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부모부담 차액보육료에 대하여는 전액 국

25) 차액보육료 결정기준액은 예산편성시, 당해연도 차액보육료를 기준으로 38.5%를 산정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연도 차액보육료의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산정할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2016년도분 차액보육료 지원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3세 24,000원, 4-5세 20,000원)는 2015년도 차액보육료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임.

고로 지원하거나 또는 적어도 보육료 수준의 중앙-지방간 매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따라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이의 해결을 위한 대정부차원의 국고지원 요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 마련 및 운영 내실화 필요

- ‘어린이집 운영지원(자체)’ 사업내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세세항목중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사업은 민간어린이집 가운데 일정자격 기준을 갖추고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거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에 상응하는 인건비(시설장 및 영아반교사 80%, 유아반교사 30%, 취사부 100%등)와 운영비(시설당 총 보육료 수입의 10% 지원)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비 100% 지원 사업임.
- 서울형어린이집 지원을 위한 2016년 예산안은 2015년 보다 5억 3,235만원이 감액된 796억 1,592만원이 편성됨.

〈표 52. 서울형어린이집 지원 내역〉

구분	서울형 어린이집	민간·가정 어린이집
행정적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의무 - 비담임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지원 - 대체교사 파견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 권장 - 비담임교사 또는 보육도우미 지원 - 대체교사 파견 지원

구 분	서울형 어린이집	민간·가정 어린이집
	- 배상보험 및 방문간호사 지원	- 배상보험 및 방문간호사 지원
재정적 지원	- 원장 : 인건비의 80%(21인 이상 시설, 20인 이하시설 교사겸직원장) - 영아반 교사 : 인건비의 80% 지원 - 유아반 교사 : 인건비의 30% 지원 - 취사부(1인) : 인건비 100% 지원 (현원 40인 이상시설에 한함) - 시간연장전담교사 80% - 24시간전담교사 80%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전담교사 80% - 환경개선비 : 규모별 400만원 ~ 1,000만원 지원(신규공인시 1회에 한해서 지원) - 기본보육료(정부지원시설 제외) · 0세 372천원, 1세 180천원, 2세 118천원	- 시간연장전담교사 120만원/월 - 24시간전담교사 120만원/월 - 영아반 운영비 지원 · 0세반 월20만원, 1세~2세반 월15만원 - 민간어린이집 서비스 향상비 지원 · 시설규모별 500만원 ~ 700만원 지원 - 기본보육료 · 0세 372천원, 1세 180천원, 2세 118천원 - 차액보육료 · 3세 20천원, 4~5세 17천원
교사 처우 개선	- 처우개선비 : 원장 190천원, 보육교사 145천원 - 보육교사 중식비 : 25천원 - 근무환경개선비 : 170천원(영아반교사)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75천원 - 누리과정(3~5세)담임수당 : 300천원	- 처우개선비 : 보육교사 200천원 - 근무환경개선비 : 170천원(영아반교사) - 교사겸직원장 지원비 : 75천원 - 누리과정(3~5세)담임수당 : 300천원

○ 서울형어린이집은 2009년 신규인증이 시작된 이래로 2011년에 그 인증비율이 41%에 이르렀다가, 2015년 9월 현재 서울형어린이집 인증비율은 22.2%로 감소됨.

- 이는 그동안 국공립어린이집에도 서울형 인증을 하던 것을 2012년부터는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서울형 공인 신규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이후 2013년 3월말부터는 서울형 가운데 국공립어린이집은 공인을 취소 시키면서 인증비율이 현재 수준으로 줄어든 것임.

〈표 53. 서울형어린이집 연도별 공인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전체 어린이집수	6,618	6,618	6,787	6,742	6,538	6,105	5,870	5,684
공인 수	2,814		76	54	28	64	567	2,025
공인취소	1,342	762	198	150	109	62	50	11
서울형유지	1,472	1,472	2,234	2,356	2,452	2,533	2,531	2,014
서울형비율	22.2%	22.2%	33%	35%	38%	41%	43%	35%

* 자료출처: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 서울형어린이집 운영 제도는 2008년 12월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계획 수립(시장 방침)’을 통해 시작되면서, 2015년 9월 현재 총 1,472개소가 인증 유지되고 있고, 이들에게 지원되는 한해의 서울시 순수 시비예산만도 800억원에 이르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서울시 관련 조례에는 이러한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및 지원,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이 부재한 상황인바, 서울시 보육정책에서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이 차지하는 중요도(예산상 및 정책상 등)를 고려해볼 때, 조례상의 명문화를 통하여 보다 책임 있는 행정집행 뿐만 아니라 서울형어린이집 운영자에게는 서울형인증에 대한 자긍심과 책임감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필요가 있다고 봄.
- 그밖에, 서울형어린이집은 한해 평균 191개소(2013~2015

까지 최근 3년간 평균, 국공립철회 건수 제외)가량이 공인 취소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서울형어린이집 재평가와 어린이집 매매 등으로 인한 취소 사유가 크게 차지하고 있음.

- 이는 당초 서울형어린이집 인증 제도를 다급하게 도입하면서 상당수의 어린이집이 서울형 인증 받았으나, 재평가 과정에서 적정기준 미달로 인해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로써, 향후 서울형어린이집의 보육질 향상과 유지를 위해서는 서울형 재평가 제도 등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되어야 할 것임.

〈표 54. 최근 3년간 서울어린이집 인증 취소 사유별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150	198	762
대표자변경	51	32	19
행정처분	52	11	2
평가인증취소	11	19	7
시설폐지	15	27	21
자진포기	15	13	48
국공립철회	-	-	536
재평가	-	75	110
시설휴지	1	7	14
기 타	5	14	5

* 자료출처: 2015 행정사무감사 자료

7)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계속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연도별 이용률 꾸준히 증가 추세
- 자치구별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실적 격차, 연례적 반복 문제
- 적극적 성과관리 등 개선 노력 필요

■ 사업 및 예산 개요

-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은 늦은 밤 귀가하는 여성의 안전한 귀가지원을 통해 여성대상 범죄를 예방하여 '여성이 안전한 서울'을 조성하고 여성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 하려는 것으로,

-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5억 3,998만원을 감액(12%감소) 하여 37억 6,213만원을 편성함.

〈표 55.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액 (A)	201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	(x-) 4,302,000	(x-) 3,762,130	(x-) △539,870	(x-) △12
기간제근로 자등보수	(x-)	(x-) 4,202,000	(x-) 3,645,130	(x-) △556,870	(x-) △13
사무관리비	(x-)	(x-) 100,000	(x-) 100,000	(x-)	(x-)
전산개발비	(x-)	(x-)	(x-) 17,000	(x-) 17,000	(x-) 100

■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현황 및 실적

- 동 사업은 '13년부터 경제진흥실 일자리기획단 일자리정책과에서 뉴딜일자리 관련 사업으로 추진해오던 것을, '15년부터 여성가족정책실로 이관된 것임.
- 사업의 주요내용은, 여성과 학생(청소년 남,녀)들의 안전귀가 지원과 안전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업무를 지원하며, 자치구 별로 선발된 안심스카우트 대원 420명(구별 11명~26명)이, 주 5일간 1일 3시간씩(22:00~01:00) 근무하며, 이들 안심스카우트들은 임금으로 월 75만원 가량을 제공받고 있음.
- 동 사업의 연도별 추진 실적을 살펴보면, 연도별 이용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고, 특히 귀가지원의 경우 그동안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15년부터는 늦은밤 까지 독서실 등에서 공부 후 귀가하는 남,녀 청소년대상으로 사업을 확대하면서 이용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파악됨.

〈표 56.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추진실적〉

(단위:건, 기준 '15. 9월말 현재)

연 도	합 계	귀가지원	취약지순찰	계도 및 기타
2013년	92,478	31,587	54,555	6,336
2014년	274,060	102,139	103,830	68,091
'15.9월말	346,591	165,513	86,431	94,647

■ 자치구별 여성안심귀가스카우트 운영 실적 격차, 연례적 반복 문제

- 그런데, 상기 사업의 운영 실적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그 격차가 크게 차이가 나타남.

- 예를들어, 2015년 기준 '귀가지원'서비스의 경우 총 165,513 회수가 제공된 가운데, 9개월간에 걸친 자치구별 평균 지원횟수는 6,620회 인데, 중구(1,760회), 도봉구(2,535회), 마포구(703회), 강서구(2,427회), 강남구(2,127회)등은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실적이 나타남.

 - 이에 반해, 송파구(16,818회), 서초구(15,493회), 금천구(12,735회), 영등포구(11,835회)는 평균에 크게 웃도는 실적을 갖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자치구별 귀가지원 실적 간 격차의 요인이 거주지역의 분포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이를 감안해 보더라도 자치구간 운영실적에는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예를들어, 2015년 기준, 마포구(9개월간 총 703회 제공)와 송파구(9개월간 총 16,818회 제공)간에는 평균 수치에서만도 2배 이상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
 - 이를 스카우트 대원 실제운영 구성원 수로 환산하여 구체화해 보면, 마포구의 경우 귀가스우트 대원 2인1조가 한 달 평균

5.4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송파구에서는 한 달 평균 88.5건의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남.

〈표 57. 2013~2015년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운영현황〉

(단위:건)

연 번	자치 구	‘13. 6~12월			‘14.1 ~1 2월			‘15. 1 ~9월		
		귀가 지원	순찰	계도 및 기타	귀가 지원	순찰	계도 및 기타	귀가 지원	순찰	계도 및 기타
총 계		31,587	54,555	6,336	102,139	103,830	68,091	165,513	86,431	94,647
1	종로구	4,480	5,983	221	7,347	7,966	1,149	6,463	5,815	185
2	중구	209	4,625	86	83	4,703	13	1,760	2,164	1,655
3	용산구				63	2,729	155	3,567	1,862	9,215
4	성동구	1,030	1,982	119	2,385	1,727	266	5,332	3,402	20
5	광진구	199	2,432	131	2,014	1,102	314	4,922	582	0
6	동대문구				1,558	4,631	1,636	4,651	1,598	7,804
7	중랑구				461	6,796	62	5,366	3,357	97
8	성북구	574	2,512	348	2,472	3,330	1,722	4,704	1,767	2,876
9	강북구	1,886	4,661	468	5,625	10,548	927	6,623	10,030	4
10	도봉구	2,846	3,069	412	4,526	4,658	339	2,535	3,571	10
11	노원구				1,696	3,691	44	3,864	3,519	449
12	은평구	1,587	3,836	103	4,515	5,084	555	4,932	6,280	564
13	서대문구	3,217	2,787	127	7,400	4,724	311	5,222	2,613	0
14	마포구	3,612	3,914	258	3,286	6,336	615	703	2,284	12
15	양천구				1,597	3,081	7,549	4,049	2,840	5,867
16	강서구	418	2,211	114	200	2,019	15	2,427	1,019	1
17	구로구				10,134	992	1,193	10,489	889	40
18	금천구				7,086	4,044	10,736	12,735	7,047	22,435
19	영등포구	5,491	4,308	289	13,977	5,984	560	11,835	5,302	296
20	동작구	468	5,112	1,214	4,180	5,999	922	6,363	5,271	519
21	관악구	1,810	3,101	178	6,578	2,974	365	12,850	1,744	61
22	서초구				4,401	1,159	7,900	15,493	3,203	24,832
23	강남구				347	1,520	537	2,127	3,053	3,145
24	송파구				4,428	2,820	18,948	16,818	3,896	10,795
25	강동구	3,760	4,022	2,268	5,780	5,213	11,258	9,683	3,323	3,765

*자료출처: 2015행정사무감사 자료

- 이러한 자치구간 운영 실적에서의 격차 문제는 2014년에도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 2015년 예산심의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지적이 있었던 사안인바, 이에 대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연례적으로 동일한 문제가 나타나는 것은, 그 개선노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며, 또한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 성과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향후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성과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다음연도의 사업추진 방향에 반영·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임.

8)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 (계속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입양아동가족 감소 추세 미반영으로 인한 연례적 불용액 및 불용을 과다 문제 해소 필요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보완 필요

■ 사업 및 예산 개요

- 동 사업은 보호필요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경제적·제도적 지원을 통해 국내입양 활성화 및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 세부사업 가운데 '장애아동 및 일반아동 입양양육보조금 및 수당 지원 등'은 입양특례법 제35조(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에 따른 국비매칭(국시비=6:4) 사업이며,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고등학생)' 지원은 「서울특별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전액 시비로 지원됨.
 - 동 사업의 2016년 예산은, 전년대비 6억 9,413만원을 감액(11% 감소)한 51억 1,681만원이 편성됨.

〈표 58.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액 (A)	201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1,986,952) 5,400,633	(x2,191,076) 5,810,942	(x1,992,292) 5,116,810	(x△198,784) △694,132	(x△9) △11
사회보장적 수혜금	(x1,986,952) 5,400,633	(x2,191,076) 5,810,942	(x1,992,292) 5,116,810	(x△198,784) △694,132	(x△9) △11

■ **입양아동가족 감소 추세 미반영으로 인한 연례적 불용액 및 불용율 과다 문제 해소 필요**

- 최근 5년간의 입양가족지원을 위한 사업비는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27억원이던 예산액은 2015년 58억원 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에 비해 매년의 불용액은 점차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고, 2014년 불용액은 25%까지 증가했고, 2015년 10월 현재 집행율도 54.2%에 머물러, 2015년 불용 추정율은 25.8%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표 59. 최근 5년간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천원)

연도	당초예산 (A)	이·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불용	불용율(%)
2011	2,768,826	156,829	2,925,655	2,875,325	50,330	1.7
2012	3,912,565		3,912,565	3,549,873	392,692	10.0
2013	4,262,835	-	4,262,835	3,876,891	385,944	9.1
2014	5,400,633	△18,000	5,382,633	4,035,314	1,347,319	25.0
2015	5,810,942			3,147,245 (10월말 현재)	2,663,697 (10월말 현재)	45.8% (10월말 현재) ※ 2015 불용추정율 25.8%
2016(안)	5,116,810					

○ 이처럼 매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데는, 현행 『입양특례법』이 2011년 전부개정 되면서 가정법원 허가제와 양부모 자격이 강화됨으로 인해 국내 입양이 급감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로인해 2014회계연도에 이어 2015년도에도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임.

○ 이는 아래 <표 60>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관련법 개정 이후 2012부터 입양아동수가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60. 연도별 입양 아동수 > (단위: 명)

구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국내	1,461	1,332	1,388	1,306	1,314	1,462	1,548	1,125	686	637
국외	2,101	1,899	1,264	1,250	1,125	1,013	916	755	236	535
계	3,562	3,231	2,652	2,556	2,439	2,475	2,464	1,880	922	1,172

○ 그런데, 그동안 이처럼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입양가정 감소 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차원의 예산은 감소하지 않아, 서울시 차원에서도 국비내시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이에 따른 불용액이 크게 증가한 측면이 있고, 이러한 입양여건이 크게 변화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2015년에도 동 예산의 불용액 과다 문제는 동일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 바 있음.

- 실제로, 2015년 10월 현재 동 사업의 집행율은 45.8%로, 연말까지 집행하더라도 2015년 불용추정율은 25.8%가 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금번 2016년 예산안에는 국고내시가 전년대비 감액되면서 서울시 매칭 사업비도 크게 줄었고, 시비로 지원되는 입양축하금 및 교육비도 감액하여 편성하였던바, 이는 최근의 예산운용 현황을 살펴볼 때 적절한 조치로 보여짐.

< 표 61. 2016년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 세부사업 증감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15 본예산 (A)	2016예산(안) (B)	증감 (B-A)	(B-A)*100/A
계	(사회보장적 수혜금)	(×2,191,076) 5,810,942	(×1,992,292) 5,116,810	△(×198,784) △694,132	△(×9.1)% △12.1%
일반아동입양	양육수당 지원	(×1,552,000) 3,880,000	(×1,470,603) 3,676,507	△(×81,397) △203,493	△(×5.2)% △5.2%
장애아동	입양양육보조금	(×202,456) 506,140	(×238,409) 596,023	(×35,953) 89,883	(×17.8)% 17.8%
입양비용(수수료)지원		(×360,460) 901,150	(×180,803) 452,007	△(×179,657) △449,143	△(×49.8)% △49.8%
숙려기간모자지원		(×76,160) 190,400	(×102,477) 256,193	(×26,317) 65,793	(×34.6)% 34.6%
일반아동	입양축하금	96,000	70,000	△26,000	△27.1%
장애아동	입양축하금	8,000	8,000	0	0
교육비		229,252	58,080	△171,172	△74.6%

■ (국내)입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정책적 보완 필요

- 다만, 입양아동가족지원 사업의 취지는 보호가자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등에게 건전한 가정을 영구적으로 제공하여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해 볼 때,
 - 동 사업의 취지가 퇴색되지 않기 위해서는 현행의 법 체계상 입양가족이 점차로 줄어드는 현상에 대한 그

원인 등을 파악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9) '안심하고 믿고 보내는 쾌적한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 사업 (주민참여사업)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주민참여예산 방식을 빌어 구립의 행정재산 개보수 등, 또 다른 형태의 특별교부금 기능 문제
- 타 자치구 및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 사업 및 예산 개요

- 동 사업은 노후화된 어린이집의 취약한 실내외 환경 개선 및 안전분야 시설 지원을 위한 것으로, 국공립어린이집 2곳(새싹어린이집, 벚골어린이집)에 대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하고자,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 편성된 것임.
- 2016년 편성된 예산은 4,000만원 임.

〈표 62.안심하고 믿고 보내는 쾌적한 국공립 어린이집 조성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액 (A)	201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	(x-)	(x-) 40,000	(x-) 40,000	(x-)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x-)	(x-)	(x-) 40,000	(x-) 40,000	(x-)

■ 주민참여예산 방식을 빌어 구립의 행정재산 개보수 등, 또 다른 형태의 특별교부금 기능 문제

- 국공립어린이집의 개보수는 현재 서울시에서 '어린이집 기능

보강(보조)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 이의 재원은 시와 자치구간 50:50으로 부담하고 있음.

- 그런데도 동 사업과 같이 주민참여예산 방식을 빌어 구립의 행정재산을 주민참여 예산의 형식으로 시의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 이 경우, 주민참여예산이 의회의 통제를 벗어난 또 다른 형태의 특별교부금의 기능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신중한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타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과의 형평성 문제

- 또한, 타 자치구 국공립어린이집과의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되며, 기존 국공립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에 대한 현행 절차와도 그 형평성에 어긋난다 할 것임.
- 이와 유사하게, 주민참여예산으로 편성된 '노후 청구어린이집 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 9,500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이 사업 역시 주민참여예산으로 재정담당관을 통해 지정되어 소관부서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어짐.

- 이와 관련하여, 2015년 9월 현재 서울시 관내 어린이집이 6,618개소(2015년 9월 현재)에 이르는데, 이 가운데 유독 여기 ‘청구어린이집’이라는 민간어린이집에 주민참여 예산 방식을 빌어 1억원에 이르는 기능보강비(주요목적: 옥상누수 정미 및 천장 공사, 바닥제 정비, 이중창 교체 등)를 요청하는 것은 주민참여사업의 그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은 매우 부적절한 사례로 보여짐.
- 덧붙여,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어린이집 기능보강비의 최대 지원 금액을 살펴본 결과 1,295만원(2014년 기준, 최저 금액 32만원, 최고금액 1,295만원²⁶⁾)인 점을 감안해볼 때, 상기의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제시된 예산규모는 기존사업과의 형평성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임.

26) 자료출처: 서울시 보육담당관

10) '여성이 안전한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참여예산)

주요쟁점 및 고려사항

-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개선 필요

■ 사업 및 예산 개요

- 동 사업은, 여성이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 비상벨· LED 보안 센서 등 · 안내판 부착, 안전교육 등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신규편성된 것임.

- 2016년 편성된 예산은 총 4억 2,800만원 임.

〈표 63. 여성이 안전한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 명세〉

(단위 : 천원, %)

구 분	2014년 예산액	2015년 예산액 (A)	2016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율 (B-A)*100/A
계	(x-)	(x-)	(x-) 428,000	(x-) 428,000	(x-) 100
자치단체경 상보조금	(x-)	(x-)	(x-) 61,300	(x-) 61,300	(x-) 100
자치단체자 본보조	(x-)	(x-)	(x-) 366,700	(x-) 366,700	(x-) 100

■ 기존 사업과의 유사·중복 문제

- 이 사업은 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 증가와 사회적 불안감이 증대됨에 따라 사회적 약자인 여성에 대한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것으로 그 취지에는 의미가 있다 하겠으나,

- 현재 서울시에서는 이러한 사업취지를 갖고 운영 중인 현행 ‘여성이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사업(대표적 사업: 여성안심택배, 2016년 사업비 4억 7,800만원)이 있고,
- 또한, 늦은밤 여성의 안전 귀가지원 및 취약지역 순찰 및 계도를 지원하는 ‘안심귀가스카우트 사업(2016년 사업비 37억 6,200만원)’이 운영 중이므로, 이에 따른 사업의 유사·중복 문제가 제기되는 바, 기존 사업과의 연계 운영 등을 통한 사업수행이 가능한 측면이 있다 할 것임.

3.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

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운용 개요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여성발전기금이 운영 중임.
- 2016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조성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 2015년도말 기금조성 총액은 240억 9,453만원이고,
 - 2016회계연도 조성계획은 수입 8억 5,491만원,
 - 지출은 9억 1,144만원이며,
 - 2016년도말 기금조성 총액은 240억 3,800만원임.

〈표 64.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 총괄표〉

(단위 : 천원)

'15년도말 조성액(a)	'16년도 조성계획			'16년도말 조성액 (e) = (a) + (d)	비 고
	수입(b)	지출(c)	증감 (d) = (b) - (c)		
24,094,534	854,915	911,449	△56,534	24,038,000	

- 2016회계연도 기금운용 계획(안)의 구체적 내역을 살펴보면,
 - 수입 총액 10억 4,944만원으로, 전년대비 2억 2,000만원이 증액(21% 증가)되었고, 주요 증감사유는 일반회계에서 전입금(3억원) 증가했기 때문임.
 - 수입의 주요 원천은 이자수입(52.9%)과 전입금(28.6%), 그리고 예치금회수(16%)로 구성되고,

- 지출은 주로 '고유목적사업비(84.9%)'와 예치금(13.1%)에 지출 할 계획임.

〈표65. 2016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수입 계획〉

(단위: 천원)

항 목	'15년 수입액	'16년 수입액	증 감	2016년 수입 대비율
합계	829,429	1,049,449	220,020	100%
예치금회수(이월금)	224,410	194,534	△29,876	18.5%
이자수입	605,019	554,915	△50,104	52.9%
기타회계 전입금	0	300,000	300,000	28.6%

〈표66. 2016회계연도 여성발전기금 지출 계획〉

(단위: 천원)

항 목	'15년 지출액	'16년 지출액	증 감	2016년 지출 대비율	비 고
합계	829,429	1,049,449	220,020	100%	
고유목적사업비 (공모사업추진)	646,429	891,449	245,020	84.9%	- 공모사업추진 : 861,449천원 - 공모사업평가 : 30,000천원
기본경비	20,000	20,000	0	1.9%	
예치금	163,000	138,000	△25,000	13.1%	

나. 여성발전기금 운용에 대한 검토의견

1) 기금운용의 적합성 문제

-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이 필요할 경우, 또는 신속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운용하는 제도로써 그 필요성은 인정되어짐.

- 하지만, 기금의 규모와 수가 확대되면 재정체계가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재정의 투명성도 확신할 수 없는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뿐만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보다는 정치적 우선순위 등이 개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운영중인 기금에 대하여 그 존속의 필요성을 재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음.
- 여성발전기금은 「여성발전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음. '15년 동 기금은 상기 목적달성을 위하여 서울시 소재 여성단체, 비영리 법인 등에게 공모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2015년 한 해 동안 총 44개 단체에 총 8억 2,942만원을 지원(1개 단체당 최저 4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 지원, 평균 1,300만원 지원)하였음.
- 그런데, 동 기금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외도 부합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본다면,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장기적으로는 동 기금 운용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기금운용재원 안정성 확보 필요

-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확충 재원이 안정적이어야 함.
 - 그러나 위의 <표 65>에서 제시하였듯이, 일반회계로의 전입금이 전체 운용기금의 28.6를 차지하고 있고, 동 기금에서의 고유목적사업을 일반회계를 통해 수행 가능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볼 때, 이처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출금을 받아 기금사업으로 운영하는 방식은 기금재원조달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고려가 요구됨.
 - 더욱이, 일반회계로부터 전출되는 재원은 그동안 2012년 10억원, 2014년 5억원, 2016년 3억원으로 꾸준히 전입되어 온 바, 동 기금재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3) 예치·예탁금 비율 줄이고 고유목적사업 강화 필요

- 한편, 기금 운용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운용이 건전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사용

되지 않거나 미진하게 사용되면서, 관련 기금을 은행금고와 재정투융자 기금에 과도하게 예치·예탁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 운용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 이런 점에서, 최근 5년간의 여성발기금 운용현황을 살펴 보면, 전체 기금운용예산 가운데 고유목적사업비로 사용되는 평균비율('11~15년 5년간 평균)은 약 66.1%이고, 예치금과 예탁금으로 지출되는 비율은 약 31.2% 가량 되는 것으로 파악되는바, 향후 기금의 설치 목적에 맞춰 고유 목적 사업이 보다 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예치금과 예탁금의 비율을 줄여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표 67. 연도별 고유목적 사업 및 예치·예탁금 운영 현황〉

항목		지출계획액	고유목적사업비	예치금	예탁금
2011	금액	1,882,456	980,000	884,456	0
	비율(%)	100%	52.1%	47.0%	0
2012	금액	3,070,179	2,070,000	320,179	600,000
	비율(%)	100%	67.4%	10.4%	19.5%
2013	금액	1,277,007	900,000	327,007	0
	비율(%)	100%	70.5%	25.6%	0.0%
2014	금액	1,471,580	921,580	500,000	0
	비율(%)	100%	62.6%	34.0%	0.0%
2015	금액	829,429	646,429	163,000	0
	비율(%)	100%	77.9%	19.7%	0
평균	금액	1,706,130	1,103,602	338,928	120,000
	비율(%)	100%	66.1%	27.3%	3.9%

* 상기 금액은 '기타경비'가 제외된 것임

4) 고유목적사업 평가 사업 운영 철저 필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야 함”.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여성발전기금의 고유사업인 공모사업에 대하여 매년 여성재단의 수탁사업을 통해 동 사업을 평가하고 있음.
- 그런데, 최근 3년간 평가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공모를 통해 지원한 여성단체 가운데 3년 연속 평가 최저 등급인 C등급 받고도, 4년 연속 동 사업의 지원대상자가 된 단체가 발견 된 바, 이는 평가결과에 대한 피드백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거나, 특정 단체지원을 위한 특혜로 오인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됨.

〈표 68. 여성기금 지원 단체별, 최근 5년간 지원금액 및 평가등급〉

(단위:천원/ *2015년은 12월 평가예정)

단체명	지원분야	지원액 및 평가결과									
		2011		2012		2013		2014		2015	
		지원액	평가등급	지원액	평가등급	지원액	평가등급	지원액	평가등급	지원액	평가등급
서울시여성단체연합회	여성정책	22,000	C								
	여성일터환경개선			16,020	C						
	여성사회참여					22,000	C				
	자유공모							25,000	C		
	자유공모									25,000	